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행정복지위원회)

김 포 시

목 차

■ 담당관실

- 1. 홍보기획관 3
- 2. 감사관 9

■ 기획조정실

- 3. 정책기획과 15
- 4. 예산법무과 19
- 5. 스마트도시과 25

■ 자치행정국

- 6. 총무과 33
- 7. 자치행정과 41
- 8. 자산관리과 55
- 9. 세정과 73
- 10. 취득재산세과 77
- 11. 징수과 81
- 12. 민원여권과 85

목 차

■ 경제국

13. 일자리정책과	93
14. 지역경제과	109
15. 기업지원과	123
16. 투자유치과	129
17. 식품안전과	139

■ 교육문화국

18. 교육청소년과	145
19. 문화예술과	165
20. 관광진흥과	175
21. 체육과	179
22. 도서관과	187

■ 복지국

23. 복지정책과	193
24. 생활보장과	217
25. 노인장애인과	239
26. 가족문화과	273
27. 아동보육과	287

목 차

■ 보건소

28. 보건행정과	359
29. 감염병관리과	369
30. 보건사업과	373

■ 읍·면·동

31. 고촌읍	385
32. 양촌읍	395
33. 대곶면	401
34. 월곶면	409
35. 김포본동	415
36. 사우동	419
37. 구래동	427

담당관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홍보기획관
기정액	45	요구액	117

□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47	0	0	47	47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통합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이자 반환금	0	47	0	0	47	47	통합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이자 반환금
임시적세외수입	15	85	15	0	70	70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포인트 및 환수금	15	85	15	0	70	70	· 유류포인트 수입 15천원 · 2025 일상경비 점검 결과 여비 환수금 70천원

시정홍보영상물 기획·제작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9. ~ 2026. 3.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시 대표 홍보 영상 제작(본영상 및 CF영상)		
사업목적	투자유치, 친선결연 등 글로벌·전국 단위 행사에 적합한 시의 비전 및 발전 방향을 홍보할 대표 영상 제작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상진흥기본법	제7조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의견수렴,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 소통매체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213,700	310,790	107,150	0	227,150	0	-23,510	30,672	
국비		0							
도비		0							
시비	213,700	310,790	107,150		227,150		-23,510	30,672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30,672	
시정홍보영상물 기획·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	30,672,000원 = 30,672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선금 지급 후 잔금(30,672천원)에 대한 명시이월 필요
- 계약 절차 수행, 사업 특성상 기획·촬영·편집 등 제작 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완료 어려움(‘26. 3월 준공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 계획 수립
- 2025. 6.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 2025. 7. ~ 8. : 사업 발주, 입찰공고, 기술협상 등
- 2025. 9. :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2026. 3. : 용역 준공

□ 최근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편 제작 / 유튜브 구독자 수 : 11,403명 -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53편(기획콘텐츠, 쇼츠, 라이브 중계 등) -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 7편(제25회 김포시민의 날 티저 홍보 영상, 김포시 기업지원 사업 홍보영상 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편 제작 / 유튜브 구독자 수 : 13,881명 -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51편(기획콘텐츠, 쇼츠, 라이브 중계, 인플루언서 협업 등) -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 13편(2024 김포-서울 통합 TV CF, 생성형 AI 활용 도시 브랜드 홍보 영상 등)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편 제작 / 유튜브 구독자 수 : 16,343명 -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46편(기획쇼츠, 유튜브 협업, 시민 인터뷰, 자체제작 쇼츠 등), -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 6편(김포 맛집 소개, 수변길 스템프투어 홍보 등) -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 30편(김포한강마라톤 홍보 영상, 축제/행사 홍보 영상 및 스케치, 바이럴 영상 등) ○ '시 대표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추진 현황 - 9월 : '시 대표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계약, 사업 착수 - 10월 : 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 11월 : 제작보고회, 영상 촬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2,100	190,056	-	22,044	
2024	213,700	197,752	-	15,948	
2025	334,300	175,829	-	158,4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영상미디어팀장 최은경	담당자	행정8급 신지유	전화	2086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감사관

(감사관)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감사관
기정액	400천원	요구액	23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408	530	300	0	230	122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따른 위탁사업비 정산환급금	408	530	300	0	230	122	2024년 사업집행 잔액 정산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정책기획과
기정액	31,340천원	요구액	40천원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5,462	618	0	578	40	-4,844	
기타수입/그외수입 ◎출장여비 환수금	5,462	618	0	578	40	-4,844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에 따른 여비 환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예산법무과
기정액	403,198,143천원	요구액	△261,26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60,400	290,000	250,000	0	40,000	29,600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김포도시공사(대행사업본부) 예금이자	260,400	290,000	250,000	0	40,000	29,600	대행사업비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폐지로 이자전액 수입 반영

○ 조정교부금등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시·군조정교부금등	148,693,276	139,878,733	137,042,603	3,137,397	-301,267	-8,814,543	
시·군조정교부금등 /시·군일반조정교부금등 ◎일반조정교부금	148,545,000	139,494,000	137,042,603	3,137,397	-686,000	-9,051,000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
시·군조정교부금등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 ◎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분)	148,276	384,733	0	0	384,733	236,457	김포시열병합발전소 설립('23)에 따른 경기도 배분내역 반영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무료법률상담수당,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배상금 등		
사업목적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해당조례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72,500	428,560	357,531	1,100	7,406	50,000	12,523	-43,9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72,500	428,560	357,531	1,100	7,406	50,000	12,523	-43,9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523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 경정(36,003,000원) - 기정(23,480,000원)	= 12,523	

□ 예산요구 사유

- 원고 국가철도공단의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2심, 시 패소) 상고에 따른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 사 건 : 대법원 2025다218492 부당이득금
 - 원고(피상고인) : 국가철도공단
 - 피고(상 고 인) : 김포시(철도과)

□ 예산증감 사유

- 2025.10.2. 위 사건 상고 제기로 인한 소송 인지대(12,478,800원) 및 송달료(44,000원)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

- 변호사 선임 사건으로 수임 변호사가 선납한 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변호사 소송위임 62건(민사41, 행정21) ※ 2023년 신규 접수사건 중 변호사 수임건 : 22건
2024	- 변호사 소송위임 64건(민사44, 행정20) ※ 2024년 신규 접수사건 중 변호사 수임건 : 19건
2025	- 변호사 소송위임 53건(민사28, 행정25) ※ 2025년 신규 접수사건 중 변호사 수임건 : 1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4,000	303,135	-	90,865	
2024	472,500	406,560	-	65,940	
2025	416,037	351,863	-	64,17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장	장은길	담당자	행정9급 송다솔	전화	2044
-----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및 조성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전역		
사업목적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에 따라 시 여건에 맞는 특화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김포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및제2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02,000	0	0	0	402,000	0	4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0	402,000				402,000		4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및 조성	207-01 연구용역비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 400,000,000원*1식	= 4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 3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행정절차(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약 체결 등)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이행기간이 촉박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명시이월 요청
 - ※ 상기 용역은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스마트도시건설 사업(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본 사업의 선행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9.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3회추경 편성,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완료
- 2025. 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01. : 계약체결 및 착공
- 2026. 04 ~ 09. : 관계부서 협의 및 시민의견 수렴(리빙랩)
- 2026. 12. :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요청(市→국토부)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2,000	-	-	40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박영서	담당자	시설7급 이명아	전화	4953
-----	--------	-------------	-----	----------	----	------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1. ~ 2026. 5.	사업위치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사업규모	소프트웨어 6식, 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9대		
사업목적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로 CCTV 영상의 유관기관 신속 제공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제4항
	해당조례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김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300,000	0	0	0	300,000	0	300,000	
국비		0							
도비		300,000				300,000		300,000	
시비		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 30,000,000원*1조 = 30,000 · Web GIS 엔진 : 32,000,000원*1식 = 32,000 · 영상중계용 스트리밍 SW : 30,000,000원*2식 = 60,000 · 스마트도시안전망 라이선스 : 75,000,000원*1식 = 75,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버 : 16,000,000원*1식 = 16,000 · Web GIS 서버 : 15,000,000원*1식 = 15,000 · 외부연계 서버 : 8,200,000원*1식 = 8,200 · 영상중계용 서버 : 18,600,000원*2대 = 37,200 · 방화벽 : 20,000,000원*1식 = 20,000 · L3스위치 : 2,200,000원*3대 = 6,6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4년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CCTV영상을 통합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25년 3회 추경을 통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하여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관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계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요청
- 이를 통해 범죄, 사고, 재난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유기적인 협업체계 확보 기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8.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8.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
 - 2025. 09. : 3회추경 편성,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완료
 - 2025. 11. : 보안성검토 및 사업 발주
 - 2026. 05. : 사업 준공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00,000	-	-	3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도시안전정보센터팀장 곽수진	담당자	전산7급 박진호	전화	4957
-----	--------	----------------	-----	----------	----	------

자치행정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총무과

(총무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총무과
기정액	896,650천원	요구액	88,716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4,144	2,379	4,600	0	-2,221	-1,765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구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4,144	2,379	4,600	0	-2,221	-1,765	자산관리과-34417호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결정 반영
임시적세외수입	10,276	95,937	3,000	2,000	90,937	85,661	
기타수입/그외수입 ◎보험료 반환금 등	10,276	9,511	3,000	2,000	4,511	-765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환수액 반영
기타수입/그외수입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금	0	86,426	0	0	86,426	86,426	장애인공무원 신규 발령(2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면적 726㎡(지상3층).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사업목적	김포시청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증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4.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95,177	446,027	583,027	0	0	-89,000	-48,000	-49,1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95,177	446,027	583,027			-89,000	-48,000	-49,1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 보육 교직원 기본급 : 경정(267,279,500원)-기정(300,879,500원) ·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 경정(79,520,000원)-기정(86,120,000원) · 퇴직적립금 등 : 경정(83,226,497원)-기정(91,026,497원)	=	-33,600
			=	-6,600
			=	-7,8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 미채용 등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당 등 미발생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10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06. : 2025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교부
- 2025. 04. : 직장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 11. : 2026년도 원아모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민간위탁금 지급 : 421,789천원 · 직장어린이집 외벽 방수공사 : 6,300천원
2024	· 민간위탁금 지급 : 415,299천원
2025	· 민간위탁금 지급 : 429,739천원 · 직장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 14,36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99,589	428,089	-	71,500	
2024	495,177	415,299	-	79,878	
2025	446,027	444,101	-	1,9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후생노무팀장 이영하	담당자	행정7급 전예란	전화	2035
-----	-----	------------	-----	----------	----	------

공무직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공무직근로자 1명		
사업목적	공무직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금사모노동조합 단체협약		제51조
	해당조례 시는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이 학자금 납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원금 상환 시까지 재직기간동안 지원해준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00	0	0	0	0	300	3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					300	3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	
공무직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07-08 이차보전금	· 공무직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300,000원*1명 =	300	

□ 예산요구 사유

- 공무직근로자 대학생 자녀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시, 원금 상환 전 발생이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1명 신청에 따른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공무직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요조사
- 2025. 10. : 수요자 대상 서류 안내 및 자격요건 파악
- 2025. 11. ~ 12. : 지원액 확정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신청자 지원자격 미충족)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	-	-	200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후생노무팀장 이영하	담당자	행정7급 전예란	전화	2035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자치행정과
기정액	189,414천원	요구액	20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825	0	618	207	825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방보조금 이자	0	825	0	618	207	825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이자반납액

시민헌장 개정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조례 개정(1건)		
사업목적	시대 변화와 흐름에 따른 김포시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지향적 시민상 정립으로 시민화합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시민헌장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시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郷심을 고취시켜 김포시의 발전과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1,850	14,350	0	0	0	-2,500	11,8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1,850	14,350				-2,500	11,8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	
시민헌장 개정	201-03 행사운영비	· 시민헌장 개정 선포식 : 경정(0원) - 기정(2,500,000원)	= -2,500	

□ 예산요구 사유

- 시민헌장 개정 추진 일정 변경에 따른 선포식 예산 감액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시민헌장 개정 추진 일정 변경에 따른 선포식 예산 감액(2026년 4월 선포식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8. : 김포시 시민현장 개정 계획 수립
- 2025. 05. ~ 계속 : 김포시 시민현장 개정 추진(기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5. 09. : 시민현장 개정 기초안 도출
- 2025. 10. ~ 11. : 시민현장 개정안 시민의견조사
- 2025. 12. : 시민현장 개정안 확정 및 조례개정
- 2026. 04. : 시민현장 선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04. ~ 05. : 김포시 시민현장 개정 키워드 공모 · 2025. 05. ~ 계속 : 추진위원회(1회), 기조위원회(4회) 개최 · 2025. 07. ~ 08. : 김포시 시민현장 개정(안) 공모전 실시 · 2025. 10. ~ 11. : 김포시 시민현장 개정 기초안 의견조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4,350	8,450	-	5,9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윤선영	담당자	행정7급 이현정	전화	2533
-----	-------	----------	-----	----------	----	------

국내외 교류 및 친선결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국내외 친선 및 교류도시
사업규모	국내외 친선도시 8개소 및 신규 교류추진 도시		
사업목적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시 이미지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93조
	해당조례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180	59,760	0	65,160	0	0	-5,400	32,5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180	59,760		65,160			-5,400	32,5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00	
국내외 교류 및 친선결연	301-09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여비 : 경정(1,000,000)원-기정(5,400,000원)	=	-4,4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참가자 실무회의 급식비 : 경정(0원)-기정(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등 김포시 방문 시 소요되는 항공, 숙박, 식비 등
- 국내외 교류 추진 실무자 간 회의 및 사전면담 시 소요되는 급식비 및 교통비 등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국내외 친선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및 신규 교류도시 발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4. 17. : 김포시-동작구 신규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23. 7. : 김포시-가평군 신규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회의 · 2023. 9. 7. : 김포시-가평군 신규 자매결연 체결 · 2023. 10. 31. : 김포시-울릉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2. 1. : 울릉도 눈축제 방문 및 실무회의 · 2024. 3. 28. : 김포시-울릉군 친선결연 협약 체결 · 2024. 4. 1. : 김포시민의 날 친선도시 초청(참석 : 상주시, 가평군 / 축하영상 : 해남군, 동작구) · 2024. 6. 5. : 해병대 PALS 행사 지원 · 2024. 6. 19. : 제27대 김포함장 김포시 방문 · 2024. 8. 5. : 제22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4. 9. 12. ~ 9. 13. 동작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 2024. 10. 4. :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김포시 대표단 방문 · 2024. 10. 4. : 베트남 투득시 대표단과의 회담 · 2024. 10. 24. : 미국 글렌데일시장 김포시 및 아트센터 방문 · 2024. 10. 25. : 울릉군민의 날 및 제1회 독도의 날 기념식 방문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1. 11. : 베트남 투득시 4주년 기념식 방문 · 2025. 2. 26. : 주한 세르비아 대사 김포시 방문 · 2025. 3. 24. : 김포시(읍·면)-해병 2사단(대대) 친선결연 · 2025. 3. 25. : 김포시-원주시 친선결연 협약 체결 · 2025. 4. 19. : 김포시민의 날 친선도시 정책홍보부스 운영(참석 : 울릉군, 원주시) · 2025. 6. 16. : 창야산시(중국) 대표단 방문 및 교류협력 회담 · 2025. 6. 27. : 9개국 주한대사 김포시 방문 · 2025. 8. 4. : 제23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5. 8. 19. : 제29회 원주시민의 날 축하영상 송부 · 2025. 9. 25. : 동작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 2025. 9. 25. : 김포시-우즈베키스탄 민족관계 및 해외동포 위원회 부위원장 차담회 · 2025. 9. 25. : 제43회 철원군 태봉제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5. 9. 26. : 2025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5. 9. 26. : 원주 댜싱카니발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5. 10. 17. : 가평군민의 날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5. 10. 21. : 사우동-가평읍 교류활성화 간담회 개최 · 2025. 10. 24. : 원주 만두축제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5. 10. 25. : 2025 울릉군민의 날 및 독도의 날 김포시 대표단 참석 · 2025. 10. 31. : 친선결연 함정 '김포함' 방문(인천항) · 2025. 11. 01. : 동작구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180	17,692	-	8,488	
2024	27,180	23,805	-	3,375	
2025	65,160	28,966	-	36,19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장 박지연	담당자	행정7급 김재상	전화	2057
-----	-------	------------	-----	----------	----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업목적	내실 있는 자치사업 발굴·실행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해당조례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등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0,624	341,038	361,230	0	0	-10,000	-10,192	-19,58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0,624	341,038	361,230			-10,000	-10,192	-19,58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192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 경정(341,038,000원)-기정(351,230,000원)	= -10,192	

□ 예산감액 사유

-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포기(양촌읍 1, 구래동 1)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납금 감액(총 2건/10,192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47건 / 360,624천원
2025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중: 45건 / 351,230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	-	-	-	-	-	-	-	-	
2024	360,624	360,624	-	300,960	300,960	-	59,664	59,664	-	
2025	351,230	351,230	-	351,230	351,230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7급 박지나	전화	2742
-----	-------	------------	-----	----------	----	------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및 여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새마을 수련대회 및 새마을 국민교육		
사업목적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위임규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300	4,500	9,300	0	0	0	-4,800	-4,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300	4,500	9,300				-4,800	-4,8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	
김포시 새마을회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및 여비 : 경정(300,000원*15명)-기정(310,000원*30명)	= -4,800	

□ 예산요구 사유

- 새마을 교육 참석 인원이 연간 계획 대비 저조하여 예산 감액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교육 참석 인원 감소(30명→15명) 및 교육비·여비 단가 조정(31만원→30만원)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10. : 새마을 교육 참석자 대상 교육비 및 여비 지급(6개 과정, 14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새마을교육 지원: 6회 19명
2024	· 새마을교육 지원: 6회 17명
2025	· 새마을교육 지원: 6회 1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760	8,405	-	1,355	
2024	9,300	5,032	-	4,268	
2025	9,300	3,916	-	5,38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허지인	전화	2268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자산관리과
기정액	17,884,371천원	요구액	2,933,039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7,174,800	6,693,300	6,213,000	0	480,300	-481,500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유희공간 이용 사용료	3,000	4,500	2,000	0	2,500	1,500	대관수요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액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7,160,000	6,675,000	6,200,000	0	475,000	-485,000	보조금 등 유휴자금 증가에 따른 단기자금운용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1,800	13,800	11,000	0	2,800	2,000	세입세출외현금 하반기 정기예금 이자수입 반영
임시적세외수입	15,292,854	13,803,239	1,008,000	10,345,000	2,450,239	-1,489,615	
재산매각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3,987,854	12,439,000	0	10,290,000	2,149,000	-1,548,854	개발사업에 따른 사유지 매각대금 (4건) 반영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0	6,800	3,000	0	3,800	6,800	-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던 노후PC 매각을 자산관리과에서 진행 - 노후PC 증가로 매각대금 증액
기타수입/그외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	5,000	7,228	5,000	0	2,228	2,228	법인카드 및 유류카드포인트 적립금 증가 등
기타수입/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수입	1,300,000	1,255,000	1,000,000	55,000	200,000	-45,000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 완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반영
/기타수입/그외수입 ◎계약보증금 환수	0	95,211	0	0	95,211	95,211	계약보증금 환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000	17,500	15,000	0	2,500	-28,500	
변상금/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	46,000	17,500	15,000	0	2,500	-28,500	변상금 분할납부 건 증액 반영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회계관계공무원 434개 직위				
사업목적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해당조례	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412	18,755	21,000	0	0	0	-2,245	1,34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412	18,755	21,000				-2,245	1,34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45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201-02 공공운영비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경정(18,754,850원) - 기정(21,000,000원)	= -2,245	

□ 예산요구 사유

- 2025. 6월 전 부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수(434개)를 반영하여, 직위별 업무 특성과 책임 규모에 따라 보증금액을 차등 적용해 보험가입을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 회계관계공무원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2025. 06. : 재정보증보험 가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입기간 : 2023. 06. 12. ~ 2024. 06. 11. [1년간] · 가입대상 : 409개 직위
2024	· 가입기간 : 2024. 06. 12. ~ 2025. 06. 11. [1년간] · 가입대상 : 401개 직위
2025	· 가입기간 : 2025. 06. 12. ~ 2026. 06. 11. [1년간] · 가입대상 : 434개 직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96	15,695	-	1	
2024	17,412	17,412	-	-	
2025	21,000	18,755	-	2,24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경리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박민아	전화	2720
-----	-------	----------	-----	----------	----	------

공용차량 유지보수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사업규모	공용차량 종합보험 일괄가입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원활한 현장 행정지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7조 제1항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0,000	274,705	432,560	0	0	-140,000	-17,855	-15,29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0,000	274,705	432,560			-140,000	-17,855	-15,29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855	
공용차량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 불용품매각처리감정평가 및 온비드 수수료 : 경정(1,000,000원)-기정(2,000,000원)	= -1,000	
	소 계		-16,855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보험료 : 경정(175,000,000원)-기정(185,000,000원) ·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 경정(4,200,000원)-기정(7,000,000원) · 스마트 배차시스템 사용료 : 경정(5,544,280원)-기정(9,600,000원)	= -10,000 = -2,800 = -4,055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잔액 반납

□ 예산증감 사유

- 공용차량 매각 차량 및 낙찰 예상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 김포시 공용차량 종합보험 용역 낙찰 금액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감액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 후 잔액 반납
- 스마트 배차시스템 사용료 집행 잔액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05. : 2025년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용역 계획보고
- 2025. 03. 06. : 2025년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용역 집행
- 2025. 04. 02. ~ 2026. 04. 01. : 보험 가입 유지 기간
- 2025. 01. ~ 12. : 공용차량 관리 및 유지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보험료(341대) 279,244,320원 / 유류비 46,433,630원 / 수리비 25,097,540원 / 기타 38,346,190원
2024	보험료(346대) 176,646,290원 / 유류비 39,175,340원 / 수리비 23,494,150원 / 기타 37,795,530원
2025	보험료(357대) 163,389,960원 / 유류비 27,941,510원 / 수리비 25,954,840원 / 기타 25,288,01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8,748	389,122	-	9,626	
2024	290,000	277,111	-	12,889	
2025	292,560	242,574	-	49,98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경리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8급 이윤규	전화	2733
-----	-------	----------	-----	----------	----	------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목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50,000	179,605	200,000	0	0	0	-20,395	-670,39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50,000	179,605	200,000				-20,395	-670,39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395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	201-02 공공운영비	·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 : 경정(179,605,000원) - 기정(200,000,000원)	= -20,395	

□ 예산요구 사유

- 부가가치세 납부 완료에 따른 예산 잔액 반납

□ 예산증감 사유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완료(179,604,550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4회 / 404,793,650원
2024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4회 / 789,920,510원
2025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회 / 179,604,55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4,794	404,793	-	1	
2024	850,000	789,920	-	60,080	
2025	200,000	179,605	-	20,39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 최미영	담당자	행정9급 오하은	전화	2925
-----	-------	------------	-----	----------	----	------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토지 : 16,284건(18,699천㎡), 건물 : 410동(482천㎡)		
사업목적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상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3~5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6,200	43,980	75,000	0	0	0	-31,020	-32,2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6,200	43,980	75,000				-31,020	-32,2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020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이용 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등) : 경정(13,000,000원)-기정(40,000,000원) = · 공유재산심의회위원회 참석수당 : 경정(1,100,000원)-기정(4,000,000원) = · 공유재산 교재 제작 : 경정(1,880,000원)-기정(3,000,000원) =	-27,000 -2,900 -1,120	

□ 예산요구 사유

-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 이용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교재 제작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공유재산 취득·처분 업무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를 매수자가 집행함에 따라 미집행분 감액
- 공유재산심의회위원회 수당, 교재 제작 비용 집행현황 반영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용역 계약
- 2025. 01. ~ 12. :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용역비 지급(분기별)
- 2025. 01. ~ 12.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참석수당 지급
- 2025. 01. ~ 12. : 공유재산 감정평가, 측량, 온비드(입찰), 유지보수 등 수시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 8회, 40건 심의 · 공유재산 매각 : 3필지 · 감정평가 : 1건
2024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 6회, 28건 심의 · 공유재산 매각 : 45필지 · 감정평가 : 1건
2025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 6회, 28건 심의 · 공유재산 매각 : 67필지 · 감정평가 : 1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889	17,538	-	4,351	
2024	76,200	72,099	-	4,101	
2025	75,000	19,561	-	55,4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자산관리팀장 최미영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행정7급 이연지 행정9급 오하은	전화	2731 2730 2925
-----	-------	------------	-----	----------------------------------	----	----------------------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사업기간	2025. 3. ~ 2025. 10.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7명 채용		
사업목적	실태조사원 채용을 통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602	100,477	59,084	0	50,000	0	-8,607	80,87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602	100,477	59,084		50,000		-8,607	80,8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607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		
		- 기본급 : 경정(64,341,600원)-기정(67,671,000원)	=	-3,329
		- 유급휴일수당 : 경정(15,960,000원)-기정(17,876,000원)	=	-1,916
		-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여비 : 경정(8,932,000원)-기정(11,560,000원)	=	-2,628
		·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4대 보험료 등 : 경정(11,243,000원)-기정(11,977,000원)	=	-734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요구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예산 집행현황 반영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2024. 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04. :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5. 04. ~ 09.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원 채용 및 운영)
- 2025. 10.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공유재산 실태조사원 16명 채용) - 기간 : 2023. 04. ~ 2023. 10. - 대상 : 토지 필지 19,393필지
2024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공유재산 실태조사원 5명 채용) - 기간 : 2024. 04. ~ 2024. 10. - 대상 : 토지 필지 20,002필지
2025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공유재산 실태조사원 7명 채용) - 기간 : 2025. 03. ~ 2025. 10. - 대상 : 토지 필지 20,561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7,528	39,527	-	38,001	
2024	19,602	15,949	-	3,653	
2025	109,084	99,924	-	9,1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 최미영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전화	2731
-----	-------	------------	-----	----------	----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수시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청사 청소업무 수행
2024	- 시청사 청소업무 수행
2025	- 시청사 청소업무 수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9,986	274,136	-	5,850	
2024	349,957	341,549	-	8,408	
2025	521,763	499,501	-	22,26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8급 정한울	전화	2736
-----	-------	------------	-----	----------	----	------

인력운영비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청사청소원 및 보일러기사 인력운영 7인		
사업목적	청사청소 관리 및 보일러 운용기사 인력운영경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92,283	398,815	413,815	0	0	0	-15,000	6,53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92,283	398,815	413,815				-15,000	6,53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시 청사 청사관리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 경정(263,092,000원 * 14%) - 기정(370,235,000원 * 14%)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청사 청소원 공무직 근로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예산증감 사유

- 청사청소원 공무직 근로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2025. 01. : 공무직 근로자 퇴사 1명
 - 2025. 05. : 공무직 근로자 퇴사 1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수시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청사 청소 및 보일러기사 공무원근로자 운용
2024	- 시청사 청소 및 보일러기사 공무원근로자 운용
2025	- 시청사 청소 및 보일러기사 공무원근로자 운용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0,155	365,409	-	14,746	
2024	392,283	375,658	-	16,625	
2025	413,815	270,069	-	143,74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8급 정한울	전화	2736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세정과

(세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세정과
기정액	271,935,713천원	요구액	4,000,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지방세	183,900,000	193,500,000	186,500,000	6,000,000	4,000,000	14,000,000	
보통세/자동차세 ◎자동차세	64,900,000	67,500,000	65,500,000	1,000,000	1,000,000	7,000,000	유류세 인하율 축소, 인분을 등 영향
보통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119,000,000	126,000,000	121,000,000	5,000,000	3,000,000	7,000,000	법인 실적 호조세 유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증가 추세 등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취득재산세과

(취득재산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취득재산세과
기정액	149,453,631천원	요구액	632,18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8,700,000	9,000,000	7,400,000	1,000,000	600,000	300,000	
징수교부금수입/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8,700,000	9,000,000	7,400,000	1,000,000	600,000	300,000	도세징수액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0	32,187	0	0	32,187	32,187	
기타수입/그외수입 ◎2024년도 출장여비 환수금	0	375	0	0	375	375	2024년도 출장여비 환수금
기타수입/그외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0	31,812	0	0	31,812	31,812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회수 (인천지법2025아527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징수과

(징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징수과
기정액	22,966,113천원	요구액	5,000,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지난연도수입	9,000,000	14,400,000	8,100,000	1,300,000	5,000,000	5,400,000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9,000,000	14,400,000	8,100,000	1,300,000	5,000,000	5,400,000	· (주)김포골드벨리FFV 파산 청산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 · 폐기물처리 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비 징수 · 카카오톡 채납액 징수 증가 예상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민원여권과
기정액	777,246천원	요구액	△92,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03,000	450,000	542,000	0	-92,000	-153,000	
수수료수입/증지수입 ◎민원문서 접수발급 (인증기 수입) 수수료	150,000	65,000	90,000	0	-25,000	-85,000	· 민원 편의를 위한 인증기 구입 (클린도시과 옥외광고물)으로 증지수입 감소
수수료수입/증지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33,000	25,000	32,000	0	-7,000	-8,000	· 정부24 등 인터넷 무료발급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 감소
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420,000	360,000	420,000	0	-60,000	-60,000	· 여권신청수수료 감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 - 전년 동월대비 신청건수 21% 감소 '25. 10월말 38,420건 '24. 10월말 48,361건

주민등록증 발급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주민등록증 발급비		
사업목적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5조제1항
	위임규정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9,184	185,482	160,165	0	0	0	25,317	76,29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9,184	185,482	160,165				25,317	76,29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317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주민등록증 발급비 : 경정(185,482,000원) - 기정(160,165,000원) =	25,317	

□ 예산요구 사유

- 17세 이상 주민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분실, 훼손, 변경)에 따른 제작 및 운송비

□ 예산증감 사유

- '25.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본격 시행,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 수요 증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5,000원), 2025년 주민등록증 발급 전체 대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68.53%
- '25. 9. 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주민과-7425호) 등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증액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주민등록증 발급비 진행 : 2025. 1. ~ 12.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주민등록증 발급 20,237건/93,628천원 집행
2024	- 주민등록증 발급 21,719건/103,213천원 집행
2025	- 주민등록증 발급 21,850건/143,713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3,517	93,628	-	9,889	
2024	109,184	103,213	-	5,971	
2025	160,165	143,713	-	16,45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유인숙	담당자	행정8급 금주경	전화	2705
-----	-------	----------	-----	----------	----	------

경제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기정액	4,534,306천원	요구액	△366,49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000	1,653	1,000	600	53	653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000	1,653	1,000	600	53	653	2025년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해지 이자수입 반영
임시적세외수입	1,000	360	1,000	0	-640	-640	
기타수입/그외수입 ◎보험료 정산 반환금 등	1,000	360	1,000	0	-640	-640	기간제근로자 정산 보험료 반영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 13명)			
사업목적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10	350	2,100	0	0	0	-1,750	-4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10	350	2,100				-1,750	-4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50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 경정(350,000원)-기정(1,800,000원) =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 : 경정(0원)-기정(300,000원) =	-1,450 -300	

□ 예산요구 사유

- 생활임금 및 노동 관련 사항 심의를 수행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비

□ 예산증감 사유

-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의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제5차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 2025. 9. :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1회, '23. 9.)
2024	·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1회, '24. 9.)
2025	· 제5차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25. 6.) ·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1회, '25. 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90	210	-	580	
2024	810	630	-	180	
2025	2,100	350	-	1,7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영옥	담당자	행정7급 장예은	전화	2276
-----	--------	-------------	-----	----------	----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휴게시설 3개소		
사업목적	관내 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3항 및 제4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	22,300	24,000	0	0	0	-1,700	-1,700	
국비		0						0	
도비	7,200	6,690	7,200				-510	-510	
시비	16,800	15,610	16,800				-1,190	-1,19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경정(22,300,000원)-기정(24,000,000원) =	-1,700	

□ 예산요구 사유

- 휴게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액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3.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2025. 4. ~ 2025. 5. : 보조사업자 적격 심사 및 대상 선정
- 2025. 6. ~ 2025. 9.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진행
- 2025. 10. ~ 2025. 11. : 정산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휴게시설 3개소 개선
2024	· 휴게시설 3개소 개선
2025	· 휴게시설 3개소 개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	24,000	-	-	
2024	24,000	21,400	-	1,820	
2025	24,000	19,820	-	4,1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영옥	담당자	행정7급 오선미	전화	2275
-----	--------	-------------	-----	----------	----	------

청년공간 창공 공간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대로 841(김포시청년지원센터)
사업규모	김포시청년지원센터 1개소		
사업목적	청년공간 중심거점 운영을 통한 청년 수요자 중심 취·창업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년기본법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제1항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김포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6,000	29,040	99,040	0	0	0	-70,000	-36,9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6,000	29,040	99,040				-70,000	-36,9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청년공간 창공 공간 운영	401-01 시설비	· 구래청년지원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 경정(0원)-기정(70,000,000원)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구)구래청년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 예산증감 사유

- (구)구래청년지원센터 기존 시설 후속 임차인 인계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산 절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청년지원센터 취·창업·자격증 프로그램 및 권역별 거점형 프로그램 운영
- 2025. 12. : 청년지원센터 운영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청년지원센터 운영(20개 프로그램 진행, 3,214명 프로그램 참여, 센터방문자 5,390명) · 구래청년지원센터 운영(76개 프로그램 진행, 3,176명 프로그램 참여, 센터방문자 6,487명) · 2023. 7. 경기 최우수 청년공간 선정(사우) · 2023. 3. 청년 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센터 공모 선정(구래, 도비 34,500천원 확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청년지원센터 운영(31개 프로그램 진행, 3,099명 프로그램 참여, 센터방문자 4,871명) · 구래청년지원센터 운영(44개 프로그램 진행, 1,476명 프로그램 참여, 센터방문자 5,994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1개소 통합, 직영 전환 운영 - 44개 프로그램 운영(거점형 프로그램 5개), 2,220명 프로그램 참여, 센터방문자 4,282명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 57,500천원 확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6,000	66,000	-	-	
2025	99,040	23,760	-	75,2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장 양미애	담당자	행정7급 정유정 시간선택제임가제 다급 장현태	전화	5888 5890
-----	--------	------------	-----	-----------------------------	----	--------------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4세 김포시 거주 청년(경기도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거주자)		
사업목적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의2 제1항
	해당조례 시장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66,000	4,171,000	4,641,000	52,000	0	0	-522,000	105,000	
국비		0						0	
도비	2,846,200	2,919,700	3,248,700	36,400			-365,400	73,500	
시비	1,219,800	1,251,300	1,392,300	15,600			-156,600	31,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2,000	
청년기본소득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청년기본소득 지원 : 경정(250,000원*4,151명*4분기) - 기정(250,000원*4,673명*4분기) =	-522,000	

□ 예산요구 사유

- 24세 김포시 청년(경기도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거주자)에게 분기별 25만원(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대상자 수요 예측인원 감소(4,673명 → 4,151명)에 따른 경기도 감액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운영계획 수립
- 2025. 1. ~ 12. : 사업 운영(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접수·심사 및 지급)
- 2025. 12. :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인원 : 13,228명 (연인원) ※ 분기별 3,307명 · 지원금액 : 3,637,000천원
2024	· 지원인원 : 12,677명 (연인원) ※ 분기별 3,169명 · 지원금액 : 3,696,000천원
2025	· 지원인원 : 9,369명 (연인원) ※ 분기별 3,123명 · 지원금액 : 2,796,5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38,000	3,656,281	-	181,719	
2024	4,066,000	3,713,786	-	352,214	
2025	4,693,000	2,807,485	-	1,885,51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장 양미애	담당자	행정8급 배명철	전화	5889
-----	--------	------------	-----	----------	----	------

인력운영비(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집단상담)(자체))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125(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사업규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직업상담사 2명)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103	11,028	13,028	0	0	0	-2,000	1,92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103	11,028	13,028				-2,000	1,9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인력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직업상담사 급여 : 경정(8,060,000원) - 기정(9,158,000원)	=	-1,098
	304-04 공무직(무기계약) 보험료부담금등	· 직업상담사 급여 : 경정(2,968,000원) - 기정(3,870,000원)	=	-902

□ 예산요구 사유

- 새일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항목 외 공무직근로자 규정에 있는 기타 제수당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단상담 프로그램(15기, 203명 수료) 및 사후관리 특강 운영(2회, 30명 참여)
2024	· 집단상담 프로그램(12기, 203명 수료) 및 사후관리 특강 운영(2회, 32명 참여)
2025	· 집단상담 프로그램(12기, 202명 수료) 및 사후관리 특강 운영(2회, 36명 참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383	6,035	-	3,348	
2024	9,103	3,276	-	5,827	
2025	13,028	6,415	-	6,61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공석	담당자	행정6급 박선영	전화	5549
-----	--------	------------	-----	----------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2023년)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023년도 미래인재 양성사업 지원 기업 2개소 및 청년 2인		
사업목적	지역특화 및 정보기술 분야 관내 중소·강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매칭으로 지역·청년 상생 혁신성장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53,236	13,250	5,733	0	7,518	0	-1	5,000	
국비	32,869	6,625	3,583	0	3,042	0	0	2,500	
도비	6,110	1,987	645	0	1,343	0	-1	750	
시비	14,257	4,638	1505	0	3,133	0	0	1,75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2023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인센티브 : 2,500,000원*1명*2분기	= 5,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방침에 따라 이월예산 활용하여 2026년도 사업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2025. 12. : 근속 청년(3년차) 인센티브 3~4분기 지급
- 2026. 1. ~ 2026. 6. : 근속 청년(3년차) 인센티브 1~2분기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 2. :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2023. 4. ~ 10. : 참여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 2023. 7. : 참여기업 대상 자체 서면점검 실시 · 2023. 10. : 사업 참여자 대상 워크숍(직무교육·네트워킹) 실시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 12. : 참여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 2024. 8. :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대체자 채용(1명) · 2024. 11. 29. : 사업 참여자 대상 워크숍(직무교육 등) 개최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1. ~ 9 : 참여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 2025. 9. ~ 12. : 근속 청년(3년차) 인센티브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974	27,914	2,410	3,060	
2024	55,646	26,787	28,420	28,859	
2025	41,671	27,660	-	14,0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장 양미애	담당자	행정7급 정유정	전화	5888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지역경제과
기정액	6,984,022천원	요구액	1,203,851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265,500	258,000	0	7,500	265,500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임대료	0	1,500	0	0	1,500	1,500	창업보육실 임대료 따른 임대료 수입 반영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 이자수입	0	264,000	258,000	0	6,000	264,000	하반기 이자수입 추정치 수정반영
임시적세외수입	0	264,925	0	0	264,925	264,925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집행잔액	0	30,828	0	0	30,828	30,828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집행잔액	0	234,097	0	0	234,097	234,097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8,000	0	0	8,000	8,000	
과태료/기타과태료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0	8,000	0	0	8,000	8,000	대부업법 위반사업자 과태료 반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275,201	0	0	275,201	275,201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4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집행잔액	0	20,552	0	0	20,552	20,552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 등반환금 ◎2024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집행잔액	0	20,552	0	0	20,552	20,552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 등반환금 ◎2024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집행잔액	0	234,097	0	0	234,097	234,097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균특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10. 29. ~ 11. 9.(12일간)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상자 278,266명		
사업목적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00,000	0	0	0	0	200,000	200,000	
국비		200,000					200,000	200,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지역화폐 발행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지역화폐 일반발행 예상 결제액(4,112,000,000원) × 5%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균특지원)사업 확정 통보내시 [경기도 지역금융과-10749(2025.10.20.)]에 따른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균특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경기도 지역금융과-10749(2025.10.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20. : 보조사업비 교부
- 2025. 10. 22. : 추진계획 수립
- 2025. 10. 27. : 성립전 예산 편성 계획 수립
- 2025. 10. 29. ~ 11. 9. : 지역화폐 발행지원(캐시백) 사업 추진
- 2026. 01.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화숙	담당자	행정7급 장현영	전화	5217
-----	-------	------------	-----	----------	----	------

2025 지역화폐 발행사업 국고보조금 특별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11. 13. ~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상자 278,266명		
사업목적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33,000	0	0	0	0	533,000	533,000	
국비		533,000					533,000	533,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33,000	
지역화폐 발행지원 (특별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지역화폐 일반발행 예상 결제액(10,648,000,000원) × 5%	≒ 533,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비(균특)보조 사업(정부 1차 추경 / '25.5.~8.)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전국 33개 지자체)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지원 확정

□ 예산증감 사유

- 2025 지역화폐 발행사업 국고보조금 특별지원 교부결정 통지[경기도 지역금융과-11160(202511.3.)]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03.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5. 11. 05. : 성립전 예산 편성 계획 수립
- 2025. 11. 13. : 추진계획 수립
- 2025. 11. 17. ~ 12. 31. : 특별지원(개시백) 사업 추진
- 2026. 01.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화숙	담당자	행정7급 장현영	전화	5217
-----	-------	------------	-----	----------	----	------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업체당 대출금리 중 2.0% ~ 3.0% 이자 지원		
사업목적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6호	
	해당조례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용자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 이내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0	140,000	300,000	0	0	0	-160,000	-16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0	140,000	300,000				-160,000	-16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0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307-08 이자보전금	·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경정)140,000,000원 - (기정)300,000,000원	= -160,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유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기 용자 및 대출 이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자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으로 이자차액보전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에 실질적인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1~4년 용자기간 이자차액(2.0~3.0%)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금을 우선으로 집행 예정임에 따른 감액 편성
-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했던 대출액 완납기한 도래 및 조기변제로 인해 이자차액 지급액 감소 ('24년 3분기 421개 업체, 51,447천원 지급 → '25년 3분기 341개 업체, 25,197천원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개최(2025년 지원계획 심의) 및 2025년 대출 취급은행 협약 체결
- 2025. 3. ~ 2025. 12. :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이자차액 보전 489개 업체 지원(신규 지원결정 199건, 총 268백만원 지원)
2024	· 이자차액 보전 421개 업체 지원(신규 지원결정 2건, 총 175백만원 지원)
2025	· 이자차액 보전 341개 업체 지원(신규 지원결정 55건, 총 86백만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4,000	268,470	-	25,530	
2024	300,000	217,826	-	82,174	
2025	300,000	86,475	-	213,5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8급 손민지	전화	2564
-----	-------	--------------	-----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도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예비)사회적기업 35개소(예비 10, 인증 25)		
사업목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기업 자생력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해당조례	제11조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1,234	122,500	245,000	0	0	0	-122,500	-68,734	
국비		0						0	
도비	95,617	61,250	122,500				-61,250	-34,367	
시비	95,617	61,250	122,500				-61,250	-34,36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2,5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도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경정(122,500,000원) - 기정(245,000,000원)	= -122,500	

□ 예산요구 사유

- 인건비 보조를 통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순환
- 인건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7204(2025.7.11.)
-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선정 기업 약정 해지 및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예상 집행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4년 정산 보조금 반납
- 2026. 1. : 2025년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5개 기업, 88,106천원 지원(※ 2024년 도비지원 신규사업 편성)
2025	· 5개 기업, 58,206천원 지원 (※ 고용노동부 국비 일자리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일몰, 일자리창출(일반인력)만 道 사업으로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91,234	88,106	-	103,128	
2025	245,000	58,206	-	186,79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이영임	담당자	행정9급 공성민	전화	2749
-----	-------	-------------	-----	----------	----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인증사회적기업 25개소		
사업목적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및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800	106,250	152,500	0	0	0	-46,250	-14,550	
국비		0						0	
도비	60,400	53,125	76,250				-23,125	-7,275	
시비	60,400	53,125	76,250				-23,125	-7,2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25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 경정(106,250,000)-기정(152,500,000)	= -46,250	

□ 예산요구 사유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고용 확대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7204(2025.7.11.)
- 전년 대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기업 및 지원 대상 참여근로자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4년 정산 보조금 반납
- 2026. 1. : 2025년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8개 기업, 153,267천원 지원
2024	· 6개 기업, 96,998천원 지원
2025	· 4개 기업, 69,048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3,497	153,267	-	230	
2024	120,800	96,998	-	23,802	
2025	152,500	69,048	-	83,45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이영임	담당자	행정9급 공성민	전화	2749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기업지원과
기정액	796,057천원	요구액	29,02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53	42,731	50	24,000	18,681	42,678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입주 기관 공공요금 등 사용료	0	42,000	0	24,000	18,000	42,000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입주기관 공공요금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53	20	50	0	-30	-33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감소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발생 이자	0	11	0	0	11	11	이자 발생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금 이자수입	0	700	0	0	700	700	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금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0	86	0	0	86	86	
이자수입/그외수입 ◎관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0	2	0	0	2	2	관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이자수입/그외수입 ◎출장여비 환수금	0	12	0	0	12	12	출장여비 오지급에 따른 반납
이자수입/그외수입 ◎김포산업지원센터 법인세 환급금	0	72	0	0	72	72	김포산업지원센터 법인세 환급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40	12,760	2,500	0	10,260	5,120	
과태료/기타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4,600	11,800	2,500	0	9,300	7,200	과태료 징수 건수 증가
과태료/기타과태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위반 과태료	0	600	0	0	600	600	과태료 발생에 따른 부과
과태료/기타과태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3,040	360	0	0	360	-2,680	조직개편(2025.1.2.) 이후 투자유치과와 예산 분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차액보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중소기업 1,000여개사			
사업목적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22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⑤시장은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610,000	3,820,000	2,500,000	1,000,000	1,500,000	0	-1,180,000	-79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610,000	3,820,000	2,500,000	1,000,000	1,500,000		-1,180,000	-79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8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07-08 이차보전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차액보전금 : (경정) 3,820,000천원 - (기정) 5,000,000천원	= -1,180,000	

□ 예산요구 사유

-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5년 간 보전해줌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확정액(지원이 확정적으로 필요한 금액) 지급 필요
- 신규기업 지원 업체 수 및 선정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 요구액은 변동

□ 예산증감 사유

- 조기 대출금 상환 기업 발생
- 수혜기업 수 증가를 위한 25년 이차차액 보전을 조정으로, 신규 선정 기업 수는 예년 대비 증가 하였으나 시의 부담액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제1회 추경 예산 확보(10억원)
- 2025. 04. :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변경 협약 체결(시 ↔ 협약은행)
- 2025. 05. ~ 10. : 월별 접수 및 선정, 기업대출 실시
- 2025. 06. : 제2회 추경 예산 확보(15억원)
- 2025. 분기별 : 협약은행 이차보전금 지급
- 2026. 01. ~ 12. : 월별 접수 및 선정, 기업대출 실시, 분기별 협약은행 이차보전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결정 : 237개 업체, 80,141백만원 · 대출실행 : 186개 업체, 62,686백만원 ※ 대출실행률 : 78.5% · 융자심의위원회 서면 1회 개최
2024	· 지원결정 : 104개 업체, 40,562백만원 · 대출실행 : 89개 업체, 35,239백만원 ※ 대출실행률 : 85.6% · 융자심의위원회 미개최
2025	· 지원결정 : 263개 업체, 81,639백만원 · 대출실행 : 132개 업체, 41,405백만원(3분기 기준) ※ 대출실행률 : 50.2% · 융자심의위원회 서면 1회 개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70,000	4,589,160	-	480,840	
2024	4,610,000	4,220,424	-	389,576	
2025	5,000,000	2,054,171	-	2,945,82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담당자	행정8급 강도연	전화	2316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투자유치과
기정액	786,224천원	요구액	464,999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0	464,999	0	0	464,999	464,999	
기타수입/그외수입 ◎김포골드밸리PFV(주) 주주 배당금	0	464,999	0	0	464,999	464,999	김포골드밸리PFV(주) 파산에 따른 채권 배당 완료 후 잔여금 발생하여 김포시 지분에 대한 배당금 수령 (주주 지분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국내·외
사업규모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IR)		
사업목적	대기업 및 잠재적 외국기업 투자가 발굴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호
제3조(기업활동 촉진·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76,750	60,750	55,000	0	0	-39,000	76,7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6,750	60,750	55,000			-39,000	76,7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000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201-03 행사운영비	·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대관 및 설비 임차료 : 경정(0원)-기정(30,000,000원) · 행사운영 : 경정(11,000,000원)-기정(20,000,000원)	= -30,000 = -9,000	

□ 예산요구 사유 : 해당없음

□ 예산증감 사유

- 국내투자유치설명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원안가결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2024.8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8. : 홍보 콘텐츠 제작
- 2025. 3. ~ 12. : 투자마케팅 활동(IR) 및 투자의향서 접수 등 오프라인 유치 활동
- 2025. 4. ~ 8. : 해외투자 전문기관(KOTRA, 해외주한상공회의소 등)과 해외 투자유치 IR 협의
- 2025. 9. : 독일 IFA산업전시회(9.3.~9.9) 참가(부스운영, 현지기업 미팅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투자유치 홍보영상 및 PPT 제작 등(27,633천원) · 독일 IFA 산업전시회 김포시 투자유치 부스 운영(42,70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15,750	70,334	-	45,41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장 이지은	담당자	행정7급 신승호	전화	2802
-----	-------	------------	-----	----------	----	------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2. 01. ~ 2027.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벽리 ~ 양촌읍 학운리
사업규모	2.38km, 양방향 2차로(폭 16.5m) [2km구간 : 국가지원, 0.38km: 시부담] * 기본설계기준		
사업목적	김포골드밸리와 광역도로(거침도~약암리) 간 연계도로 구축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해당조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법적근거	해당조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해당조례	지원도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 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03,000	0	0	0	103,000	0	2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103,000				103,000		2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	401-01 시설비	· 기본 및 실시설계 : 10,000,000원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0,000,000원	= 10,000 = 1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당초 '25년 12월 용역완료 계획에 따라 잔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규모 영향평가 (환경·재해)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 소요로 용역 기간이 연장됨
- '26년 4월 관계기관 협의 및 용역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는 사항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신규산단 진입도로 지원 신청
- 2022. 2. : 타당성 확보 및 사업선정
- 2023.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4. :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26.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 2026. 5.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협의 (국토부)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시부담)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2,660,000	0	103,000	0	0	0	103,000	0	2,557,000	
공정별	설계비	103,000	103,000				103,000			
	보상비	180,000		0					180,000	
	공사비	2,097,000		0					2,097,000	
	감리비	280,000		0					28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3,000	-	-	103,000	4분기 집행 예정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투자유치과	사업규모	L=2.38km, B=16.5m	이월 요구액 (천원)	2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벽리(거침약암도로) ~ 양촌읍 학운리(학운5산단)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이지연	담당자	시설7급 이지선	전화	2813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식품안전과
기정액	1,044,412천원	요구액	16,642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6,751	56,405	65,010	6,399	-15,004	-10,346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증지수입	62,000	50,000	65,000	0	-15,000	-12,000	영업신고 건수 감소에 따른 수입액 감소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12	12	10	0	2	0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운영 이자 수입	4,739	6,393	0	6,399	-6	1,654	전년도 민간위탁금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
임시적세외수입	0	300	100	0	200	300	
기타수입/그외수입 ◎행동강령위반 환수금 등	0	300	100	0	200	300	출장여비 과수령분 환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300	103,046	36,300	35,300	31,446	8,746	
과징금/과징금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5,000	846	3,000	0	-2,154	-4,154	과징금 부과업소 감소
과태료/기타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7,800	1,800	1,200	0	600	-6,000	해당 법령 위반업소 발생 건수에 따른 과태료 수입액 변동
과태료/기타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60,000	50,000	24,000	12,000	14,000	-10,000	
과태료/기타과태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14,000	8,400	600	800	7,000	-5,600	
과태료/기타과태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7,500	42,000	7,500	22,500	12,000	34,500	

교육문화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기정액	5,157,531천원	요구액	116,74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632,812	1,721,595	1,617,665	3,330	100,600	88,783	
·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강좌수강료	490,000	493,000	460,000	0	33,000	3,000	·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수강료 수입
·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고촌도담수영장 사용료	256,000	310,000	240,000	0	70,000	54,000	· 고촌도담수영장 사용료 수입
· 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 ◎청소년재단 운영수입(프로그램 등)	879,640	833,165	917,665	0	-84,500	-46,475	· 학교단체 급식 이용 감소 (64,000식 → 51,000식)
· 징수교부금수입/징수교부금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172	85,430	0	3,330	82,100	78,258	· 2025년 하반기 징수교부금
임시적세외수입	6,550	5,600	0	0	5,600	-950	
· 기타수입/그외수입 ◎그외수입	2,150	400	0	0	400	-1,750	· 유류포인트 환급금 등
· 기타수입/그외수입 ◎청소년재단 카드포인트 수입 (카드포인트 등)	4,400	5,200	0	0	5,200	800	· 청소년재단 카드포인트 수입 ·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인턴 기업지원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5,000	0	0	5,000	5,000	
· 과태료/기타과태료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과태료	0	5,000	0	0	5,000	5,0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중학교 수학여행 지원

사업기간	2025. 3.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중학교			
사업목적	학교 밖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 학부모 교육비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해당조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⑩ 사·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70,000	993,762	1,319,100	0	0	0	-325,338	-476,2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70,000	993,762	1,319,100				-325,338	-476,23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5,338	
학교 교육경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중학교 수학여행 지원 : 경정(993,761,410원)-기정(1,319,100,000원) =	-325,338	

□ 예산요구 사유

- 중학생 수학여행 비용 지원으로 학교 밖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수학여행 실시교 수요조사 결과 대비 실제 실시교 2개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9. : 중학교 대상 수학여행 실시 여부 수요조사
- 2025. 03. ~ 12. : 수학여행 비용 신청 및 지급(학교 ⇄ 시)
- 2026. 0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 관내 중고교 26개교 · 지원금액 : 2,301,248천원
2024	·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19개교 ※ '24년 이후 고등학생은 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실시로 제외 · 지원금액 : 1,300,755천원
2025	·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16개교 · 지원금액 : 993,76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90,000	2,301,248	-	28,199	
2024	1,470,000	1,300,755	-	169,245	고등학생 교육청지원
2025	1,319,100	993,762	-	325,33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자치팀장 오은화	담당자	행정8급 김수정	전화	2580
-----	--------	------------	-----	----------	----	------

고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

사업기간	2025. 7.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고등학교		
사업목적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 제2항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21029호(2025.8.26)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90,742	176,638	0	0	0	0	176,638	-214,1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90,742	176,638					176,638	-214,10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6,638	
고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	308-10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 176,638,000원	= 176,638	

□ 예산요구 사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부담 특례조항이 2025.1.1.자로 실효되었으나, 2025.8.26. 법 개정으로 2027.12.31.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6개월 분)에 대한 김포시 부담금 예산 반영 필요
 ※ 부담 비율 : 중앙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 (경기도 2.9%, 김포시 2.23%)

□ 예산증감 사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에 따라 관내 고등학생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지원
- 2026년 고교 무상교육경비 지자체 재원분담 요구 [경기도평생교육과-13049(2025.09.3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법정 전출금 지급
- 2026. 0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전학년 · 전출금액 : 363,196천원
2024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전학년 · 전출금액 : 390,742천원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3,196	363,196	-	-	
2024	390,742	390,742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자치팀장 오은화	담당자	행정7급 윤대희	전화	2581
-----	--------	------------	-----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11세 ~ 18세 여성청소년		
사업목적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해당조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해당조례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 대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97,872	2,762,088	2,342,088	0	0	403,200	16,800	264,216	
국비		0						0	
도비	749,362	828,627	702,627			120,960	5,040	79,265	
시비	1,748,510	1,933,461	1,639,461			282,240	11,760	184,95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8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경정(2,762,088,000원)-기정(2,745,288,000원)	= 16,800	

□ 예산요구 사유

- 여성 청소년(11세 ~ 18세)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 인원 대비 우리 시 신청 인원이 초과하여, 부족 인원 100명에 대한 도비 보조 예산 편성
- 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가내시 반영 [경기도 청소년과-15688(2025.09.2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 신청 접수(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 2025. 05. ~ : 대상자 검증 및 지역화폐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9월)
- 2025. 1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여성청소년 16,159명 지원(월 13,000원, 최대 연 156,000원)
2024	여성청소년 15,545명 지원(월 13,000원, 최대 연 156,000원)
2025	여성청소년 16,330명 지원 중(월 14,000원, 최대 연 168,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40,592	2,600,000	-	540,592	
2024	2,497,872	2,420,000	-	77,872	
2025	2,745,288	2,745,288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8급 황수현	전화	2989
-----	--------	-----------	-----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자체)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11세 ~ 18세 여성청소년		
사업목적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8,800	0	0	0	0	58,800	58,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8,800					58,800	58,8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8,8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자체)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자체시비) : 168,000원*350명 =	58,800	

□ 예산요구 사유

- 여성 청소년(11세 ~ 18세)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 인원 대비 우리 시 신청 인원이 초과하여, 부족 인원 350명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 경기도 추가 예산 미교부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추가 소요분을 우리 시 자체 시비로 확보하여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 대상자 검증
- 2025. 12. : 지역화폐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8급 황수현	전화	2989
-----	--------	-----------	-----	----------	----	------

(재)청소년재단 운영(출연금)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중봉청소년수련관 등)
사업규모	중봉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5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사업목적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685,546	10,010,054	10,427,447	0	13,920	-319,991	-111,322	1,324,50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685,546	10,010,054	10,427,447		13,920	-319,991	-111,322	1,324,50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1,322	
(재)청소년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청소년수련원 : 경정(1,071,750,000원)-기정(1,183,072,000원)	= -111,322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재단 목적사업 수행
-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시민·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학교단체 외부체험학습 일정 취소사항 발생에 따라 김포시청소년수련원 단체급식비, 청소용역비 및 일·숙직 수당 등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의결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11.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분기별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4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5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554,493	9,248,744	-	305,749	
2024	8,685,546	8,220,292	-	465,254	
2025	10,121,376	6,774,223	-	3,347,15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7급 전지현	전화	2595
-----	--------	-----------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규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사업목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상담 서비스 질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600	8,700	7,800	0	0	400	500	-900	
국비		0						0	
도비	9,600	8,700	7,800			400	500	-9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 경정{50,000원*(12명*2월+14명*6월+15명*1월+17명*3월)} -기정{50,000원*(12명*2월+14명*10월)}	5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증가(14명 → 17명)
- 202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가내시 반영 [경기도 청소년과-16289(2025.10.10.)호, 18145(2025.11.0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매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3명 지원
2024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2명 지원
2025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7명 지원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600	7,200	-	2,400	
2024	9,600	7,700	-	1,900	
2025	8,200	7,000	-	1,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8급 황수현	전화	2989
-----	--------	-----------	-----	----------	----	------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기간	2020. ~ 2028.	사업위치	장기동 1888-9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2개동 / 연면적 9,181.63㎡		
사업목적	신도시 권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19,879	1,500,000	0	0	0	0	1,500,000	880,121	
국비		0						0	
도비								0	
시비	619,879	1,500,000					1,500,000	880,12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0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	401-01 시설비	· 청소년수련관 건립 : 1,200,000,000원	= 1,200,00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250,000,000원	= 250,000	
	401-03 시설부대비	· 수수료 등 : 50,000,000원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청소년 인구의 48%가 거주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는 신도시 지역에 청소년수련 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2024.9.12.)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착공 필요
- 2025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5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적정	-	-	-
일자	2024.11 반영	2021.10.	-	-	-	-	2025.10.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1. :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0. 02. ~ 2020. 08.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0. 08. ~ 2021. 08. : 리맥 타당성조사 의뢰 및 심사
- 2021. 05. ~ 2021. 10. :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 2021. 12. : 부지매입
- 2022. 03. ~ 2022. 04. : 김포시 건축기획 심의 및 계약심사
- 2022. 05. ~ 2022. 08. : 조달청 설계 공모
- 2022. 09. ~ 2024. 0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 2028.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74,774,000	32,774,000	1,500,000	0	0	0	0	1,500,000	40,500,000	
공정별	설계비	1,256,000	1,256,000	0						
	보상비	31,159,000	31,159,000	0						
	공사비	38,369,000		1,200,000				1,200,000	37,169,000	
	감리비	3,862,000	300,000	250,000				250,000	3,312,000	
	부대비	128,000	59,000	50,000				50,000	19,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연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속 추진 · 2023. 08. ~ 11. :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예산 420억 신청(미선정)
2024	· 2024. 06. ~ : 특별교부세 및 국비 재정지원 신청, 2025년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수요 신청 등 · 2024. 0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25	· 2025. 08. : 2025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5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1,098	21,219	619,879	-	
2024	619,879	418,906	-	200,973	집행잔액 반납완료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육청소년과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9,181.63㎡	4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위치	장기동 1888-9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7급 박효성	전화	2596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문화예술과
기정액	7,622,757천원	요구액	△169,21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524,822	622,298	548,575	0	73,723	97,476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아트빌리지 임대료	81,666	82,928	81,666	0	1,262	1,262	연체료 1건 발생으로 증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김포아트홀 카페 임대료	0	12,672	20,513	0	-7,841	12,672	계약 종료 후 신규 카페 계약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김포아트센터 무인카페 자판기 임대료	0	1,375	0	0	1,375	1,375	무인카페 신규 설치
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김포아트홀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109,000	180,000	100,000	0	80,000	71,000	기획공연 기획 횟수 증가 및 티켓 가격 인상
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통진드레문화센터 입장료수입	22,000	9,298	23,000	0	-13,702	-12,702	공연횟수 축소
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미디어아트센터 기획전시 입장료수입	10,000	3,000	10,000	0	-7,000	-7,000	유료전시 완료
사용료수입/주차요금수입 ◎김포아트홀 주차요금수입	17,500	16,400	17,400	0	-1,000	-1,100	김포시 대관으로 인한 무료주차비용 증가
사용료수입/주차요금수입 ◎아트빌리지 주차요금수입	130,306	151,297	138,636	0	12,661	20,991	미디어센터 개관으로 인한 주차비용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김포아트홀 대관수입	93,000	95,225	90,000	0	5,225	2,225	전년 대비 대관 신청을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통진드레문화센터 대관수입	12,000	14,115	12,960	0	1,155	2,115	전년 대비 대관 신청을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아트빌리지 대관수입	350	1,995	400	0	1,595	1,645	전년 대비 대관 신청을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아트빌리지 숙박체험관 체험료	49,000	50,000	54,000	0	-4,000	1,000	동절기 숙박 수요 감소 반영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김포아트센터 무인자판기 공공요금	0	993	0	0	993	993	무인카페 신규설치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김포아트홀 카페 공공요금	0	3,000	0	0	3,000	3,000	신규계약업체 공공요금 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9,831	10,612	9,800	0	812	781	
기타수입/그외수입 ◎김포문화재단 법인포인트 캐쉬백 전환금	571	877	300	0	577	306	하반기 법인포인트 증가
기타수입/그외수입 ◎김포문화재단 선납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금	5,660	5,787	5,660	0	127	127	
기타수입/그외수입 ◎아트빌리지 전기차 충전시설 수익금	3,600	3,948	3,840	0	108	348	전기차 충전량 증가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0. ~ 2026. 6.	사업위치	김포국제조각공원(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사업규모	김포국제조각공원 경관조명, 분전반, 아트홀 외관 도색 등		
사업목적	조각공원 노후 기반시설을 보수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적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위임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00,000	0	0	0	400,000	0	4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400,000				400,000		400,000	특조금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김포국제 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 관람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 : 22,000,000원	= 22,000	
		· 전기선로, 분전반 설치 : 50,000,000원	= 50,000	
		· 야간 경관 조명 설치 : 130,000,000원	= 130,000	
		· 아트홀 외관 기능보수 및 도색: 148,000,000원	= 148,000	
		· 아트홀 및 작품 주변 통로 바닥 개선 : 50,000,000원	= 5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26. 2. 준공예정)
- 2026년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 추진에 따른 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계획 수립
- 2025. 10. : 실시설계 계약 및 착공
- 2026. 2. : 실시설계 준공
- 2026. 3. ~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0,000	-	-	4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문화예술과	사업규모	경관조명, 분전반, 아트홀건물 도색 등	이월 요구액 (천원)	4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사업위치	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이풍주	담당자	행정7급 허태구	전화	2364
-----	-------	----------	-----	----------	----	------

김포 덕포진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24-4번지 외 3필지
사업규모	덕포진 부대시설 265.94㎡		
사업목적	덕포진 유희공간 리모델링으로 시민에게 역사문화 체험공간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
제51조(보조금) 국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600,000	600,000	0	0	0	0	415,000	
국비		0							
도비		300,000	300,000					207,500	
시비		300,000	300,000					207,5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15,000	
김포 덕포진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401-01 시설비	· 김포 덕포진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 407,000,000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등)	= 407,000	
	401-02 감리비	· 김포 덕포진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감리비 - 전체 공사비 × 건축감리대가요율 직선보간법 계산 : 540,000,000원 × 1.692 ≒ 8,000,000원	≒ 8,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준공일 미도래(2026. 1월)에 따라 사업비 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8. : 설계용역(구조안전 진단 및 전시용역 포함)
- 2025. 9.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5. 10. : 철거, 공사 및 전시용역 착공
- 2026. 1.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유희공간 재생사업 사업 신청 및 선정
2025	· 구조안전 진단 및 설계용역 완료 · 철거 완료, 건축 및 전기, 소방, 통신 공사 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00,000	185,000	-	41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문화예술과	사업규모	덕포진 부대시설 265.94㎡	이월 요구액 (천원)	415,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덕포진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위치	대곶면 신안리 224-4 외 3필지		
위치도					
현장사진					
	역사문화체험관 조감도		민속유물전시관 조감도		
	역사문화체험관 철거 현장(내부)		민속유물전시관 철거 현장(내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탁여진	담당자	시설8급 조진희	전화	2483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관광진흥과
기정액	1,239,067천원	요구액	36,892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09,382	119,909	142,500	-53,423	30,832	10,527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 카페 사용료	0	17,188	0	0	17,188	17,188	24년도 말 카페 입점에 따라 최초 부과 후 사용료 수입으로 반영 사용료가 연말에 수납되어 4회 추경 편성
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	81,632	37,765	115,000	-73,423	-3,812	-43,867	전년도 7월 입장료를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수납액 확인 후 추경 재편성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이용료 수입	6,000	7,000	6,000	0	1,000	1,000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이용료 증액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카페 상하수도 사용료	0	1,200	0	0	1,200	1,200	애기봉 내 카페 입점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 수납 (계량기 별도 사용료 고지 불가에 따른 세입 조치)
수수료수입/증지수입 ◎관광사업 민원 증지수입	1,750	1,750	1,500	0	250	0	관광사업 민원처리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수수료 증액
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기타사업수입	20,000	55,000	20,000	20,000	15,000	35,000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1~2024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이자(시비)	0	6	0	0	6	6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정산 마감에 따른 이자발생액(시비) 수납
임시적세외수입	0	6,042	0	0	6,042	6,042	
기타수입/그외수입 ◎부래도 관광자원화 조성공사(통신) 관급자재 선고지 금액 환불	0	2,022	0	0	2,022	2,022	부래도 관광자원화 조성공사(통신) 관급자재(DVD 등) 구매취소물품단장에 따른 선고지 금액 환불
기타수입/그외수입 ◎애기봉 생태담방로 조성공사 물가변동분 회수	0	3,520	0	0	3,520	3,520	2025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른 물가변동분 회수 조치
기타수입/그외수입 ◎함상공원 무료화에 따른 지급준비금 반납	0	500	0	0	500	500	함상공원 무료화로 입장료 지급준비금 (시재금)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반납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18	0	0	18	18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0~2024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이자(국비)	0	14	0	0	14	14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정산 마감에 따른 이자발생액(국비) 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이자(도비)	0	4	0	0	4	4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정산 마감에 따른 이자발생액(도비) 수납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체육과

(체육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체육과
기정액	11,241,943천원	요구액	1,314,872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504,927	2,622,793	2,478,446	0	144,347	117,866	
재산입대수입/공유재산입대료 ◎풍무국민체육센터 자판기임대료	610	1,111	610	0	501	501	하반기 자판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풍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762,180	766,000	806,820	0	-40,820	3,820	감면 대상 및 이용 인원 변동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풍무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29,020	53,000	38,016	0	14,984	23,980	체육관 대관건수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풍무국민체육센터 강습비	125,730	121,000	108,000	0	13,000	-4,730	이용 인원 변동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풍무국민체육센터 기타사용료(프로그램)	111,010	70,000	63,000	0	7,000	-41,010	이용 인원 변동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대관료	28,900	26,500	28,900	0	-2,400	-2,400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2025년 5월~6월)에 따른 2달 휴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농어민체육문화센터 강습료 (배드민턴)	55,800	41,800	46,800	0	-5,000	-14,000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2025년 5월~6월)에 따른 2달 휴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515,000	512,500	528,000	0	-15,500	-2,500	통진문화회관 시설개선공사 (2025년 7월)에 따른 1달 휴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통진문화회관 기타사용료	177,300	156,700	163,500	0	-6,800	-20,600	통진문화회관 시설개선공사 (2025년 7월)에 따른 1달 휴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노을체육관 강습료	36,000	40,000	30,000	0	10,000	4,000	배드민턴 비울제강습 정원 확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양곡복합형생활체육시설 수영장 사용료	580,000	670,000	553,800	0	116,200	90,000	어린이 강습반 증설 한강스포츠클럽 휴관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양곡복합형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강습료	54,000	55,000	72,000	0	-17,000	1,000	·도색공사로 인한 휴관 이용 인원 변동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양곡복합형생활체육시설 기타사용료	29,250	109,000	39,000	0	70,000	79,750	기구필라테스 신설 G.X반 증설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27	149	0	0	149	22	2024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이자액 발생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 상반기 법인카드 계좌 이자 수입	0	33	0	0	33	33	2025년 상반기 법인카드 계좌 이자 발생
임시적세외수입	84,141	1,573,929	-	1,350,500	223,429	1,489,788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김포 학운문화체육센터 건립)	0	1,350,000	0	0	1,350,000	1,350,000	세입과목 변경 : 그외수입 →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0	2,447	0	0	2,447	2,447	프로팀 경기 횡수 감소(PO진출 실패) 유소년팀 대회 조기 탈락에 따른 식비·숙박비 등 잔액 발생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김포FC 출연금 집행잔액	83,641	218,913	0	0	218,913	135,272	사무국 직원 결원(2명)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유소년 임차 예정 숙소 준공 지연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잔액 발생
기타수입/위약금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하자소송 판결금	0	2,261	0	0	2,261	2,261	직장운동경기부(테니스복싱) 합숙소 하자소송 판결금 수령
기타수입/그외수입 ◎풍무국민체육센터 전력거래대금 수입	500	0	0	500	-500	-500	전력감축대상권역 제외
기타수입/그외수입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김포 학운 문화체육센터 건립)	0	0	0	1,350,000	-1,350,000	0	세입과목 변경 : 그외수입 →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타수입/그외수입 ◎직장운동경기부 건강보험료 환급금 및 이자발생액	0	272	0	0	272	272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건강보험료 과납에 따른 환급금 및 이자발생
기타수입/그외수입 ◎직장운동경기부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및 이자발생액	0	36	0	0	36	36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장기요양보험료 과납에 따른 환급금 및 이자발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127	2,596	0	0	2,596	2,469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27	2,596	0	0	2,596	2,469	2024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발생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기간	2024. 1. 1. ~ 2027. 12. 31.	사업위치	사우동 120-5(풍무역세권 체육공원)
사업규모	실내배드민턴장 1개동(배드민턴 9면, 주차장 60면)		
사업목적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전용 실내구장을 건립하여 대회 및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30,000	1,220,000	220,000				1,000,000	790,000	
국비									
도비		1,000,000					1,000,000	1,000,000	
시비	430,000	220,000	220,000					-21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401-01 시설비	· 공사비 : 1,000,000,000원	= 1,0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경기도 체육진흥과-134161(2025.9.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	-	-	-	적정	-	-	-
일자	2024.11 반영	2023.10.	-	-	-	-	2023.10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2. : 건축기획용역 준공
- 2023. 8. : 부지선정 중간보고회
- 2023. 9. : 부지매입 1차협의(LH공사 김포사업단)
- 20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
- 2024. 3. : 실시설계 착수
- 2024. 11. :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착수
- 2025. 1. : 토지매입 계약진행 요청(김포시 → LH공사)
- 2025. 3. : 토지매입 계약진행 요청 회신(김포시 → LH공사)
- 2025. 6. : 도시관리계획(변경) 불수용(경관녹지 → 주제공원)
- 2025. 9. :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 2025. 10. ~ 12. : 건축기획용역 실시
- 2026. 1. ~ 3.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26. 4.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13,740,000	430,000	1,220,000	220,000	-	-	-	1,000,000	12,090,000	
공 정 별	설계비	440,000	420,000	20,000	20,000	-	-	-	-	-
	보상비	-	-	-	-	-	-	-	-	-
	공사비	13,165,000	-	1,200,000	200,000	-	-	-	1,000,000	11,965,000
	감리비	85,000	-	-	-	-	-	-	-	85,000
	부대비	50,000	10,000	-	-	-	-	-	-	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축기획용역 준공 · 부지선정 중간보고회
2024	· 실시설계 착수 · 도시관리계획(변경) 착수
2025	· 사업계획 변경 · 건축기획용역 재착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30,000	53,661	376,339	-	
2025	596,339	138,450	457,889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배드민턴장 9면, 주자장 60면	4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위치	사우동 120-5 (풍무역세권 체육공원)		

위치도



배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시설8급 방현욱	전화	2589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서관과

(도서관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도서관과
기정액	1,473,603천원	요구액	1,97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5,067	22,639	6,232	14,469	1,938	7,572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장기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8,753	1,269	2,137	0	-868	-7,484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반영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통진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1,761	1,256	1,564	0	-308	-505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반영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마산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1,821	1,665	1,821	0	-156	-156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반영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통진도서관 복사기,사물함 임대료	110	412	110	390	-88	302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반영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도서관과 복합기 임대료	600	887	600	200	87	287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반영 및 2025년 사용료 부과 금액 반영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풍무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2,022	1,310	0	1,939	-629	-712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반영
사용료수입/주차요금수입 ◎모담도서관 주차요금수입	0	14,400	0	10,800	3,600	14,400	모담도서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요금 세입 증가분 반영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모담도서관 공유재산 전기요금	0	1,440	0	1,140	300	1,440	모담도서관 북카페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 반영
지방행정제제·부과금	0	40	0	0	40	40	
과태료/기타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0	40	0	0	40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과태료 세입 편성

복지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복지정책과
기정액	9,053,990천원	요구액	△29,26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000	700	1,000	0	-300	-300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독립운동기념관 대관수입	1,000	700	1,000	0	-300	-300	독립운동기념관 대관 수요 소폭 감소

8.13.~14.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8. 13.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6세대 10명			
사업목적	8.13.~14. 호우피해 이재민에게 숙박비·식비지원 등 구호비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재해구호법		제4조제2항
	위임규정	②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제1항3호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745	0	0	0	0	5,745	5,745	
국비		0						0	
도비		5,745					5,745	5,745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745	
8.13.~14.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지원	302-02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보상금	·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지원 - 숙박비 : 3,990,000원 - 급식비 : 1,755,000원	= 5,745	재해 구호 기금 (도비)

□ 예산요구 사유

- 8.13.~14. 호우로 침수 피해를 받은 이재민 등에게 구호 지원하여 생계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28.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교부
- 2025. 9. 10.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계획 보고
- 2025. 11월 중 침수피해 이재민 6세대 10명 재해구호기금 집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0, 통진읍 마송1로 150
사업규모	2개소 44명		
사업목적	종합사회복지관(2개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400	26,550	26,400	0	0	0	150	150	
국비		0						0	
도비	26,400	26,550	26,400				150	15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 : 경정(26,550,000원)-기정(26,400,000원)	= 150	

□ 예산요구 사유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처우개선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처우개선비 월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24명 지급 : 14,400,000원
2024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44명 지급 : 25,850,000원
2025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평균)44명 지급 : 22,15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400	14,400	-	-	
2024	26,400	25,850	-	550	
2025	26,400	22,150	-	4,2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19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89개소 733명			
사업목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해당조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 제1항
	해당조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9,250	102,200	108,000	0	0	0	-5,800	-7,0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9,250	102,200	108,000				-5,800	-7,0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8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 경정(102,200,000원)-기정(108,000,000원)	= -5,80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최종 인원 반영에 따른 감액(761명 → 733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7. ~ 2022. 10. :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 용역 실시
- 2023. 01. :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신규 편성
- 2025. 01. / 0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상·하반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 545명
20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 664명
202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 73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8,500	77,550	-	10,950	
2024	109,250	94,450	-	14,800	
2025	108,000	102,200	-	5,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행정7급 차지인	전화	2616
-----	-------	------------	-----	----------	----	------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기간	2025. 12.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4,400명		
사업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양한 보훈서비스 안내를 위한 우편 발송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임규정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546,500	6,386,960	6,740,000	0	0	-357,000	3,960	-159,5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546,500	6,386,960	6,740,000			-357,000	3,960	-159,5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60	
국가유공자 위문	201-02 공공운영비	· 국가유공자 안내문 발송 : 900원(e그린우편) * 4,400명	= 3,960	

□ 예산요구 사유

- 보훈사업 신청 독려를 통한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유공자·보훈가족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및 김포시 보훈회관 개관에 따른 보훈단체별 변경사항 안내

□ 예산증감 사유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훈서비스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5. 12.: e그린 우편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인원 : 4,608명)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위로금 지급 : 5,316,030천원
2024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인원 : 4,583명)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위로금 지급 : 6,144,750천원
2025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인원 : 4,378명)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위로금 지급 : 5,404,43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24,000	5,316,030	-	107,970	
2024	6,546,500	6,144,750	-	401,750	
2025	6,383,000	5,404,430	-	978,5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보훈회관 운영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풍무로 146번길 82(풍무동), 김포시 보훈회관
사업규모	연면적 1,833.87㎡(지하1층 ~ 지상4층)		
사업목적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보훈단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호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21,931	524,500	0	0	0	-2,569	521,93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1,931	524,500				-2,569	521,93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69	
보훈회관 운영비	401-01 시설비	· 인테리어 공사비 : 경정(181,260,000원)-기정(200,000,000원)	=	-18,74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 : 경정(173,171,000원)-기정(157,000,000원)	=	16,171

□ 예산요구 사유

- 보훈단체 서류 및 물품 배치공간 부족에 따른 사무물품 구입
- 4층 사무실 자외선 및 빛물 차단 등을 위한 발코니 어닝 설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인테리어 공사 낙찰차액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 착수
- 2025.06.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
- 2025.08.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준공
- 2025.08. ~ 10. : 시설 물품 구입 및 단체 이전
- 2025.12. : 추가 물품 구입 및 어닝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25년 1월 ~ 3월) : 19,268천원 · 보훈회관 대행사업비 지급(25년 6월) : 127,500천원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실시(25년 6월 ~ 8월) : 159,747천원 · 시설 물품 구입(25년 8월 ~ 10월) : 155,930천원 · 보훈회관 입주 청소, 이사 용역(25년 8월~10월) : 19,228천원 · 통신선로 증설 공사 실시(25년 10월) : 2,24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524,500	483,917	-	40,583	10.31.기준 집행현황

※ 별첨자료 : 자산및물품취득비 세출요구액 상세내역

(단위 : 원)

연번	품목	규격	단가	수량	소요경비추정액	비고
계					16,171,000	
1	전동 어닝	7,000mm * 3,000mm	3,000,000	2	6,000,000	보훈회관 4층
2	3단 캐비닛	BNSTC083D, 800*410*1160mm	198,000	6	1,188,000	보훈단체 사무실 (10개)
3	5단 캐비닛	BNSTC08D, 800*410*1874mm	320,000	7	2,240,000	
4	U형 테이블	BPSFD006U, 600*1200*720	161,000	2	322,000	
5	회의용 테이블	BNSIT016P, 1600*1000*720	413,000	1	413,000	
6	강화유리	-	70,710	71	5,021,000	
7	탁구대	티마운트 EDGE7	493,500	2	987,000	지하1층 (창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전화	2617
-----	-------	----------	-----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59명			
사업목적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임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3조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30,000	30,000	0	0	0	0	10,000	
국비	10,000	15,000	15,000				0	5,000	
도비	6,000	9,000	9,000				0	3,000	
시비	4,000	6,000	6,000				0	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 AI 안부든든 서비스 : 경정(8,250원*91명*12월)-기정(8,250원*101명*12월)	= -1,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생활 개선 지원 : 경정(500,000원*18가구)-기정(500,000원*16가구)	= 1,00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구조 변화(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고독사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 사전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세부사업내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2025. 04.: 고독사 위험군 발굴 일제조사
- 2025. 01. ~ 2025. 12.: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이용 : 71명 · 고독사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 생활 개선 지원 8명(주거환경 개선 4명, 심리지원 4명)
2025	·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이용 : 98명 · 고독사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 생활 개선 지원 13명(심리지원 11명, 주거환경 개선 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000	14,805	-	5,195	
2025	30,000	22,868	-	7,13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7급 이윤희	전화	2635
-----	-------	------------	-----	----------	----	------

누구나 돌봄 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60명		
사업목적	돌봄 필요 위기가구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부문에 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90,000	200,000	0	0	0	-10,000	190,000	
국비		0						0	
도비		95,000	100,000				-5,000	95,000	50%
시비		95,000	100,000				-5,000	95,000	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누구나 돌봄 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서비스 제공 사업비 : 경정(480,000원*260명) - 기정(480,000원*281명)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신청자 감소 및 실제 이용자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 감액(281명->260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누구나 돌봄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집
- 2025. 02 : 누구나돌봄 제공기관 업무협약
- 2025. 03 : 누구나돌봄 사업 서비스 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누구나돌봄(생활, 동행, 식사, 일시보호, 주거안전) 대상자 : 201명, 1,473회 서비스 지원 · 누구나돌봄 사업비 지급 : 139,72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0	139,725	-	60,27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 한은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윤진	전화	2488
-----	-------	------------	-----	-----------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271가구		
사업목적	실직, 폐업, 중한질병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기준, 지원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해당조례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상 및 지원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66,205	1,318,333	1,408,333	0	0	0	-90,000	152,128	
국비		0						0	
도비	233,241	395,500	422,500				-27,000	162,259	30%
시비	932,964	922,833	985,833				-63,000	-10,131	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	
경기도형 긴급복지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경정(1,037,000원*1,271가구)-기정(1,037,000원*1,358가구)	= -90,000	

□ 예산요구 사유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시군별 도비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 및 지원가구 감소 현황 반영 (1,358가구->1,271가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현장조사
- 수시: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사후조사
- 동절기 (10월 ~3월): 연료비 추가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805가구, 799,874천원)
2024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975가구, 1,065,957천원)
2025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933가구, 1,041,00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65,000	799,874	-	65,126	
2024	1,166,205	1,065,957	-	100,248	
2025	1,408,333	1,041,001	-	367,33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 한은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유경	전화	2489
-----	-------	------------	-----	------------	----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5. 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5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200	29,466	32,898	0	0	0	-3,432	-5,734	
국비	24,640	20,736	23,028				-2,292	-3,904	70%
도비	5,280	4,365	4,935				-570	-915	15%
시비	5,280	4,365	4,935				-570	-915	1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432	
가사·간병 방문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경정(491,100원*5명*12월)-기정(456,910원*6명*12월)	= -3,432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국민기초, 차상위) 가구 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한부모가정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이용 대상자 감소(6명 → 5명)에 따른 감액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분기별 : 서비스 비용 예탁(예탁처 : 사회보장정보원)
- 2025. 9. :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기관 점검(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6명
2024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6명
2025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5명 서비스 이용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000	31,000	-	-	
2024	35,200	35,200	-	-	
2025	32,898	23,027	-	9,8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6급 정진우	전화	2613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생활보장과
기정액	171,339,741천원	요구액	386,93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0	18	0	0	18	18	
기타수입/그외수입 ◎2024년 의료급여 관리자 국민연금 과오납 반환	0	18	0	0	18	18	24년 의료급여관리사 국민연금 과오납 반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000	70,000	40,000	10,000	20,000	30,000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40,000	70,000	40,000	10,000	20,000	30,000	상환금액 증가 고려하여 증액

(생활보장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서명	생활보장과
기정액	4,437,023천원	요구액	72,592천원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내부거래	3,532,579	3,734,232	3,440,785	223,674	69,773	201,653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3,532,579	3,734,232	3,440,785	223,674	69,773	201,653	일반회계 전입금

생계급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9,586명		
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951,000	51,658,000	49,239,000	0	0	2,329,000	90,000	6,707,000	
국비	40,456,800	46,492,200	44,315,000			2,096,200	81,000	6,035,400	90%
도비	3,146,340	3,615,660	3,446,500			163,160	6,000	469,320	7%
시비	1,347,860	1,550,140	1,477,500			69,640	3,000	202,280	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생계급여 지원 : 경정(449,090원*9,586명*12월)-기정(449,090원*9,569명*12월) =	9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 복지사업과-24179(2025.10.20.)호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

□ 예산증감 사유

-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6.4% 인상됨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9,569명 → 9,586명)
- 2025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2%)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인상액	52,342	80,016	99,423	117,715	131,986	142,86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 ~ 2025.12. : 생계급여 지급 (매월 20일 : 정기급여, 매월 말 : 추가급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8,134명 총 35,875,921천원 지급
2024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8,656명 총 44,652,402천원 지급
2025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9,199명 총 42,622,569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707,000	35,875,921	-	831,079	
2024	44,951,000	44,652,402	-	298,598	
2025	51,568,000	42,622,569	-	8,945,43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2621
-----	-------	------------	-----	------------	----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60건		
사업목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 건강 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000	26,000	36,000	0	0	0	-10,000	-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000	26,000	36,000				-10,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노인틀니 : 경정(100,000원*100건) - 기정(100,000원*140건) · 임플란트 : 경정(100,000원*160건) - 기정(100,000원*220건)	= = -4,000 -6,000	

□ 예산요구 사유

- 2023~2024년 대비 신청률 감소로 예산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대상자 요건, 수혜 주기, 지원 기준 등에 따른 신청 감소
(※ 노인틀니 : 7년에 1회/ 임플란트 : 평생 2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8.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합의 완료
- 2020.09. :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 ~ :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76건(노인틀니 140건, 임플란트 136건), 28,994천원 지원
2024	- 268건(노인틀니 119건, 임플란트 149건), 31,672천원 지원
2025	- 121건(노인틀니 64건, 임플란트 57건), 15,328천원 지원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000	28,994	-	6	
2024	33,000	31,672	-	1,328	
2025	36,000	15,328	-	20,67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9급 안영채	전화	5293
-----	-------	-------------	-----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기간	2025. 7.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차(전시민), 2차(소득 상위 10% 제외한 시민)		
사업목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21,343,411	0	0	0	121,740,011	-396,600	121,343,411	
국비		109,142,622				109,499,562	-356,940	109,142,622	90%
도비		6,063,479				6,083,309	-19,830	6,063,479	5%
시비		6,137,310				6,157,140	-19,830	6,137,310	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6,600	
민생회복 소비쿠폰	201-01 사무관리비	· 선불카드 수수료(발행비용 등) : 경정(130,050장 * 2,000원) - 기정(150,000장 * 2,000원)	= -39,9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 경정 {(36,695명*150,000원) + (423,001명*250,000원) + (2,100명*400,000원) + (17,552명*500,000원)} - 기정 {(34,048명*150,000원) + (425,000명*250,000원) + (2,800명*400,000원) + (17,500명*500,000원)}	= -356,700	

□ 예산요구 사유

-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차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중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확정내시 통보(3차)에 따른 감액
※ 경기도 복지정책과-19181(2025.10.20.)호 관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8.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 통보 (도 복지정책과-15477호)
- 2025. 7. 21. ~ 9. 12.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2025. 9. 22. ~ 10. 31.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474,305명 (내시 인구대비 98.9%)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428,797명 (내시 인구대비 97.7%)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21,740,011	101,162,018	-	20,577,99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2621
-----	-------	------------	-----	------------	----	------

자활근로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34명			
사업목적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2항
	해당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81,571	2,247,555	2,155,554	0	0	0	92,001	365,984	
국비	1,693,414	2,022,800	1,940,000				82,800	329,386	90%
도비	56,447	67,426	64,666				2,760	10,979	3%
시비	131,710	157,329	150,888				6,441	25,619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2,001	
자활근로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시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 : 경정(1,427,070원*8명*12월)-기정(1,510,416원*8명*12월)	=	-8,001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 경정(1,395,870원*126명*12월)-기정(1,396,218원*120명*12월)	=	100,002

□ 예산요구 사유

- 자활근로 신규사업단(오백국수, GS편의점) 운영 및 자활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 증가(128명→134명)
- 도 복지사업과-22550(2025.9.29.)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 시 : 자활근로 참여자 발굴 및 근무지 배치
- 점 검 : 정기점검 연1회,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활근로사업 : 월평균 97명 (시 직접수행 9명, 자활센터 88명)
2024	- 자활근로사업 : 월평균 116명 (시 직접수행 7명, 자활센터 109명)
2025	- 자활근로사업 : 월평균 129명 (시 직접수행 8명, 자활센터 12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49,851	1,723,832	-	26,019	
2024	1,881,571	1,848,844	-	35,727	
2025	2,155,554	1,814,428	-	341,1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승미	전화	2623
-----	-------	------------	-----	------------	----	------

희망저축계좌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55명		
사업목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1항
	법령 위임규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2,905	234,601	150,939	0	0	0	83,662	71,696	
국비	146,556	211,220	135,844				75,376	64,664	90%
도비	4,950	7,013	4,529				2,484	2,063	3%
시비	11,399	16,368	10,566				5,802	4,969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3,662	
희망저축계좌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125,700원*155명*12월)-기정(125,700원*100명*12월)	= 83,662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희망저축계좌 I(생계·의료급여대상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주거·교육·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대상자의 본인적립금에 대해 1:1 또는 1:3 매칭 지원하며, 가입대상자 지속적인 증가
- 도 복지사업과-22445(2025.9.26.)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월 ~ 11월 : 대상자 신규 모집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60명 (희망 I : 13명, 희망 II : 47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84명 (희망 I : 19명, 희망 II : 65명)
2025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96명 (희망 I : 21명, 희망 II : 7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2,000	142,000	-	-	
2024	162,905	118,154	-	44,751	
2025	150,939	150,938	-	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송현지	전화	2624
-----	-------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030명		
사업목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및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66,409	2,089,681	1,417,463	0	144,350	0	527,868	623,272	
국비	1,319,768	1,880,713	1,275,716		129,916		475,081	560,945	90%
도비	43,993	62,690	42,524		4,330		15,836	18,697	3%
시비	102,648	146,278	99,223		10,104		36,951	43,630	7%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7,868	
청년내일 저축계좌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169,000원*1,030명*12월)-기정(169,000원*770명*12월)	≒ 527,868	

□ 예산요구 사유

-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대상자의 본인적립금에 대해 1:1 또는 1:3 매칭 지원하며, 가입대상자 지속적인 증가
- 도 청년기획과-10686(2025.9.29.)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월 : 대상자 신규 모집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41명 (차상위 이하: 195명, 차상위 초과: 146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549명 (차상위 이하: 323명, 차상위 초과: 226명)
2025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770명 (차상위 이하: 477명, 차상위 초과: 29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41,039	927,555	-	113,484	
2024	1,466,409	1,466,409	-	-	
2025	1,561,813	1,561,813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송현지	전화	2624
-----	-------	------------	-----	----------	----	------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의료급여관리사 3명		
사업목적	질병·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9,220	118,500	116,000	0	0	0	2,500	-720	
국비	95,380	94,800	92,800				2,000	-580	80%
도비	16,690	16,590	16,240				350	-100	14%
시비	7,150	7,110	6,960				150	-40	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의료급여관리사 기본급 및 퇴직급여 총당금 : 경정(118,500,000원) - 기정(116,000,000원)	= 2,500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공무직 3명)

□ 예산증감 사유

- 도 복지사업과-20486(2025.9.5.)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변경내시
- 2025. 12월 : 기본급, 4대 보험료 등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집행률: 100%)
202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집행률 100%)
2025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집행률: 8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1,000	111,000	-	-	
2024	119,220	119,220	-	-	
2025	116,000	105,627	-	10,37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재가의료급여사업(성립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13명		
사업목적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입원문제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372	12,325	8,921	0	0	404	3,000	5,953	
국비	5,098	9,860	7,137			323	2,400	4,762	80%
도비	892	1,725	1,249			57	419	833	14%
시비	382	740	535			24	181	358	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의료급여사업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의료비 및 비의료서비스(돌봄, 식사, 이동 등) : 경정(12,325,000원) - 기정(9,325,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입원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통합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재가의료서비스 대상자 증가(5명→13명)
- 도 복지사업과-22638(2025.9.30.)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변경내시
- 2025년 매월 서비스 연계 비용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비용 2,925천원 집행
2025	-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비용 8,745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372	2,925	-	3,447	
2025	9,325	8,745	-	5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의료기관
사업규모	8,247명		
사업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482,887	3,684,598	3,391,704	-17,826	0	241,128	69,592	201,71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82,887	3,684,598	3,391,704	-17,826		241,128	69,592	201,71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9,59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 경정(3,684,598,000원) - 기정(3,615,006,000원)	= 69,592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금 예탁
-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예산증감 사유

- 도 복지사업과-22638(2025.9.30.)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 국·도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국비	도비	시비	비고
61,409,978	49,127,983	8,597,397	3,684,598	국80% 도14% 시6%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25년 1월, 4월, 7월, 10월, 12월 진료비 예약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2024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2025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51,388	2,951,388	-	-	
2024	3,482,887	3,482,887	-	-	
2025	3,615,006	3,372,004	-	243,00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기정액	217,296,488천원	요구액	282,90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2,132	0	0	2,132	2,132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과오지급 반환금 이자	0	2,116	0	0	2,116	2,116	부당지급급여 이자 환수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자	0	0	0	0	0	0	사업 정산 후 발생이자 207원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사업 이자	0	8	0	0	8	8	사업 정산 후 발생이자 8,465원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자체) 이자	0	8	0	0	8	8	사업 정산 후 발생이자 8,140원
임시적세외수입	0	66,014	0	6,639	57,303	66,014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과오지급 시비 반환금	0	47,225	0	0	47,225	47,225	부당지급급여 환수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4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집행잔액	0	8,713	0	6,639	2,074	8,713	경로당 보조금 환수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4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 시설 환수 시비 반환금	0	9,600	0	0	9,600	9,600	시설 보조금 환수
기타수입/그외수입 ◎2019년 노인돌봄종합지원사업 미환급 본인부담금	0	476	0	0	476	47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 후 소멸시효 도래한 미환급금 지자체 이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50,000	0	0	50,000	50,000	
과징금/과징금 ◎장애인활동법 위반 과징금	0	50,000	0	0	50,000	50,000	장애인활동법 위반 과징금 징수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147,859	0	0	147,859	147,859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국비) 이자	0	413	0	0	413	413	2024년 사업 발생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국비) 잔액 및 이자	0	338	0	0	338	338	2023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국비) 이자	0	152	0	0	152	152	2022년 사업 발생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과오 지급 국비 반환금	0	135,450	0	0	135,450	135,450	부당지급급여 환수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3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기금) 이자	0	18	0	0	18	18	2023년 사업 발생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도비센터) 이자	0	179	0	0	179	179	2024년 사업 발생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도비센터) 잔액 및 이자	0	138	0	0	138	138	2023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도비센터) 이자	0	64	0	0	64	64	2022년 사업 발생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과오지급 도비 반환금	0	8,707	0	0	8,707	8,707	부당지급급여 환수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 시설 환수 도비 반환금	0	2,400	0	0	2,400	2,400	부당지급급여 환수

기초연금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약 49,700명		
사업목적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기초연금법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2,991,506	174,796,438	175,083,353	0	0	0	-286,915	11,804,932	
국비	114,094,054	139,838,350	140,067,882				-229,532	25,744,296	
도비	9,779,491	6,991,618	7,003,094				-11,476	-2,787,873	
시비	39,117,961	27,966,470	28,012,377				-45,907	-11,151,49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86,915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기초연금 : 경정(174,796,438,000원)-기정(175,083,353,000원) =	-286,915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 영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경기도 노인복지과-100(2025.01.02.)호]
- 2025년 기초연금 변경내시 [경기도 노인복지과-22989(2025.10.1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기초연금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월평균 43,304명 지원
2024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월평균 45,361명 지원
2025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월평균 47,794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7,569,231	147,562,418	-	6,813	
2024	162,991,506	162,595,044	-	396,462	
2025	175,083,353	145,412,952	-	29,670,4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은미	전화	2205
-----	--------	------------	-----	------------	----	------

경로당 운영지원(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경로당 380개소			
사업목적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시장은 경로다아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41,350	800,860	912,710	0	0	-11,850	-100,000	-40,49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41,350	800,860	912,710			-11,850	-100,000	-40,49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725,140,000원)-기정(805,068,000원) · 난방비 : 경정(75,720,000원)-기정(95,792,000원)	= = -	-79,928 -20,072

□ 예산요구 사유

- 각종 공과금, 부식비, 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비용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 도비 보조 운영비 부족분 시비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설치 예상 경로당 수 감소(10개소→5개소)로 운영비 및 난방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운영비 지급(분기별)
- 2025. 11. : 하반기 난방비 지급
- 2025. 12. : 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로당 368개소 운영비, 난방비 지원
2024	· 경로당 375개소 운영비, 난방비 지원
2025	· 경로당 380개소 운영비, 난방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4,043	534,043	-	-	
2024	841,350	832,452	-	8,898	
2025	900,860	798,222	-	102,63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상미	전화	2207
-----	--------	------------	-----	------------	----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경로당 회장 385명, 분회장 14명		
사업목적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보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7조의2 제3항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8,800	237,600	247,800	0	0	0	-10,200	-1,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8,800	237,600	247,800				-10,200	-1,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00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경로당 회장 활동비 : 경정(50,000원*368명*12월)-기정(50,000원*385명*12월)	= -10,200	

□ 예산요구 사유

- 경로당 운영과 회원 관리 등 공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 경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지원 예정 경로당수 대비 실지급 경로당 수 차이분(△17개소 예상)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경로당 회장 368명, 분회장 14명 활동비 지급
2024	·경로당 회장 375명, 분회장 14명 활동비 지급
2025	·경로당 회장 380명, 분회장 14명 활동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0,300	230,250	-	50	
2024	238,800	234,250	-	4,550	
2025	247,800	196,200	-	51,6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상미	전화	2207
-----	--------	------------	-----	------------	----	------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4번길 48(사우동)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	
사업규모	노인복지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사업목적	평생교육, 건강, 상담,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34,772	2,254,722	2,312,439	0	0	-55,259	-2,458	19,9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34,772	2,254,722	2,312,439			-55,259	-2,458	19,9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58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 경정(2,251,422,000원)-기정(2,253,880,000원)	= -2,458	

□ 예산요구 사유

-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5.10월 공용차량 자산관리과 일괄 보험 가입(3대)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2,458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1.10. (노인종합복지관) 2022.01. (북부노인복지관)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반기별 보조금 교부 및 노인복지관 운영
- 2025. 12.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2,076,020천원) · 노인복지관 2개소 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 실시(143,990천원)
2024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2,194,372천원) · 노인종합복지관 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 실시(40,400천원)
2025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2,253,880천원) · 노인종합복지관 물품 구입 (3,3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20,010	2,162,995	-	57,015	
2024	2,234,772	2,164,273	-	70,498	
2025	2,257,180	2,254,534	-	2,64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호드림밥상 사업

사업기간	2025. 6. 9.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100 (사우동)
사업규모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250명		
사업목적	어르신에게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중식 제공을 통한 건강한 노년의 삶 지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해당조례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96,870	0	296,870	0	0	0	296,8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6,870		296,870			0	296,8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호드림밥상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 경정(217,556,000원)-기정(266,256,000원)	= -48,700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환경개선 등 : 경정(79,314,000원)-기정(30,614,000원)	= 48,700	

□ 예산요구 사유

- 사업 개시일 조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 감액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개시일 조정으로 민간위탁금 불용액 분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
 - 2026년 사업규모 증가 (250명→300명)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2022.9.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2026.05 :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제반시설 확충
- 2025. 06.~ : 효드림 밥상 사업 실시
- 2025. 10. ~ 2025.11 :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중간 모니터링 실시
- 2025. 11. ~ 2025.12 : 2026년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좌석 수 확보 및 환경개선 설비 구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250명 대상 어르신들에게 1식 4찬 점심식사 제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96,870	296,87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은미	전화	2205
-----	--------	------------	-----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지원(균특)

사업기간	2025. 10.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응급관리요원 2명		
사업목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비상대응수당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해당조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8,792	0	0	0	0	8,792	8,792	
국비		8,792					8,792	8,792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79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지원(균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응급관리 요원(2명) 비상대응 수당	= 8,792	

□ 예산요구 사유

- '25.9.26.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디지털돌봄시스템 복구 기간 중 비상대응에 따른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지원 교부 [경기도 노인복지과-24246(2025.11.04.)호]
- 디지털돌봄시스템 복구 기간 중 비상대응 수당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2022.9.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2025.12. : 비상대응시 응급관리요원 비상대응 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은미	전화	2205
-----	--------	------------	-----	------------	----	------

호우피해 사망자 장례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8.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호우피해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기여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재해구호법		제1조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제4조제2항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5,000	0	0	0	0	15,000	15,000	
국비		0						0	
도비		15,000					15,000	15,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호우피해 사망자 장례비 지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구호지원금(장례비) 지원 (1인) : 15,000,000원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호우피해 사망사고(2025. 8. 13.)에 대한 장례식장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호우피해 사망자 장례비 지원 (1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8. : 호우피해 구호지원금 교부 신청(김포시 → 경기도)
- 2025. 10. : 호우피해 구호지원금 교부 완료(경기도 → 김포시)
- 2025. 10. : 구호지원금(장례비) 지원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호우피해 사망자 장례비 지원(15,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공석	담당자	시설8급 이윤재	전화	2215
-----	--------	-----------	-----	----------	----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36명		
사업목적	장애 진단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등을 지원함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20	6,800	4,600	0	0	0	2,200	2,280	
국비	2,260	3,400	2,300				1,100	1,140	
도비	339	510	345				165	171	
시비	1,921	2,890	1,955				935	96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진단비 및 검사비 : 경정(50,000원*136명)-기정(50,000원*92명) =	2,20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등록이 필요함에도 진단비·검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6416(2025.7.10.)호]

○ 지급 대상자수 증가(92명→136명)에 따라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45건 · 장애 재판정 검사비 32건
2024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63건 · 장애 재판정 검사비 35건
2025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42건 · 장애 재판정 검사비 3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20	3,493	-	1,027	
2024	4,520	3,911	-	609	
2025	4,600	4,308	-	29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행정8급 채다정	전화	2212
-----	--------	-------------	-----	----------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964명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연금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409,229	7,538,936	7,182,391	138,652	0	0	217,893	129,707	
국비	5,179,460	5,277,728	5,027,674	97,056			152,998	98,268	
도비	453,954	451,701	430,943	8,320			12,438	-2,253	
시비	1,775,815	1,809,507	1,723,774	33,276			52,457	33,69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7,893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장애인연금 : 경정(7,538,936,000원)-기정(7,321,043,000원)	= 217,893	

□ 예산요구 사유

- 연금 지급을 통한 관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장애인연금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3939(2025.10.10.)호]
- 지급 대상자수 증가(1,926명→1,964명)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인원 : 23,830명 / 월 평균 : 1,985명 / 월 평균 지급액 : 573,874천원
2024	· 누적인원 : 23,544명 / 월 평균 : 1,962명 / 월 평균 지급액 : 609,958천원
2025	· 누적인원 : 19,501명 / 월 평균 : 1,950명 / 월 평균 지급액 : 625,92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900,751	6,886,488	-	14,263	
2024	7,409,229	7,337,988	-	71,241	
2025	7,321,043	6,259,279	-	1,061,76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장애수당(기초)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612명		
사업목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94,364	1,152,588	1,139,123	0	0	0	13,465	58,224	
국비	766,055	806,812	797,386				9,426	40,757	
도비	231,522	242,043	239,216				2,827	10,521	
시비	96,787	103,733	102,521				1,212	6,94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465	
장애수당(기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장애수당 : 경정(1,152,588,000원)-기정(1,139,123,000원)	= 13,465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 대한 매월 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장애수당(기초)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6145(2025.11.3.)호]
- 장애수당(기초) 대상자 증가(1,573명→1,612명)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인원 : 16,862명 / 월 평균 : 1,405명 / 월 평균 지급액 : 85,180천원
2024	· 누적인원 : 19,624명 / 월 평균 : 1,450명 / 월 평균 지급액 : 92,023천원
2025	· 누적인원 : 15,859명 / 월 평균 : 1,586명 / 월 평균 지급액 : 94,68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22,408	1,022,160	-	248	
2024	1,094,364	1,086,350	-	8,014	
2025	1,139,123	957,240	-	181,88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장애수당(차상위등)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74명		
사업목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87,060	700,048	660,289	0	0	0	39,759	12,988	
국비	480,209	490,034	462,202				27,832	9,825	
도비	145,110	147,010	138,661				8,349	1,900	
시비	61,741	63,004	59,426				3,578	1,2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759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지원금 : 경정(700,048,000원)-기정(660,289,000원)	= 39,759	

□ 예산요구 사유

-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장애수당(기초)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6145(2025.11.3.)호]
- 장애수당(차상위) 대상자 증가(730명→774명)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인원 : 8,683명 / 월 평균 : 723명 / 월 평균 지급액 : 55,272천원
2024	· 누적인원 : 9,018명 / 월 평균 : 752명 / 월 평균 지급액 : 57,180천원
2025	· 누적인원 : 7,573명 / 월 평균 : 757명 / 월 평균 지급액 : 58,07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5,613	663,260	-	2,353	
2024	687,060	686,160	-	900	
2025	660,289	580,740	-	79,5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85명		
사업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동·하절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0	255,147	250,465	0	0	0	4,682	15,147	
국비		0						0	
도비	48,000	76,544	75,139				1,405	28,544	
시비	192,000	178,603	175,326				3,277	-13,39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82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냉난방비 : 경정(255,147,000원)-기정(250,465,000원)	= 4,682	

□ 예산요구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변경내시[경기도 장애인복지과-20647(2025.8.27.)호]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대상자 증가(665명→685명)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인원 : 4,980명/월 평균 : 623명/ 월 평균 지급액: 28,945천원
2024	· 누적인원 : 5,104명/월 평균 : 638명/ 월 평균 지급액: 29,609천원
2025	· 누적인원 : 3,989명/월 평균 : 665명/ 월 평균 지급액: 30,57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2,000	231,560	-	3,440	
2024	240,000	236,870	-	3,130	
2025	250,465	183,460	-	67,0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8명		
사업목적	독거·취약가구 및 사지마비 등인 최종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73,754	1,264,446	1,185,386	0	0	0	79,060	190,692	
국비		0						0	
도비	322,126	379,334	355,616				23,718	57,208	
시비	751,628	885,112	829,770				55,342	133,48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9,060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원금 : 경정(1,264,446,000원)-기정(1,185,386,000원)	79,060	

□ 예산요구 사유

-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장애인 중 사지마비(와상)인 최종증장애인의 안전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330시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1999(2025.9.1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회의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상자 : 16명
2024	· 대상자 : 17명
2025	· 대상자 : 1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84,614	984,614	-	-	
2024	1,073,754	805,316	-	268,438	
2025	1,185,386	1,052,055	-	133,33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9급 최보람	전화	2211
-----	--------	-------------	-----	------------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밀알사랑터(북변1로16번길 34) 행복한사람들(풍년로 19)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가정식 주택내 공동생활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0,900	355,200	320,900	0	0	28,900	5,400	24,300	
국비		0						0	
도비	33,090	35,480	32,090			2,890	500	2,390	
시비	297,810	319,720	288,810			26,010	4,900	21,9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관리운영비 : 경정(355,200,000원)-기정(349,800,000원)	= 5,40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3971(2025.10.10.)호]
-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원
2024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원
2025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7,087	293,887	-	23,200	
2024	330,900	328,424	-	2,476	
2025	349,800	349,8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희연	전화	2218
-----	--------	-------------	-----	------------	----	------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장장애인복지관(김포한강3로 291)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32,968	1,808,072	1,878,072	0	0	0	-70,000	-24,89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32,968	1,808,072	1,878,072				-70,000	-24,89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 경정(1,471,415,000원)-기정(1,538,565,000원) · 운영비 : 경정(203,102,000원)-기정(205,952,000원)	= =	-67,150 -2,85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특수교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예정액 감액(△67,150천원)
- '25.10월 공용차량 자산관리과 일괄 보험 가입(2대)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2,85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9.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8. ~ 2024. 10. : 2025년 사업계획 수립
- 2025. 01. ~ 2025.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종사자 32명 지원(1,629,687천원)
2024	·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종사자 32명 지원(1,740,364천원)
2025	·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종사자 32명 지원(1,808,07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44,435	1,629,687	-	14,748	
2024	1,832,968	1,740,364	-	92,604	
2025	1,878,072	1,808,072	-	7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가족문화과

(가족문화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가족문화과
기정액	11,109,847천원	요구액	1,025,27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19,000	1,152,360	20,000	10,000	1,122,360	1,133,360	
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비 수입	9,000	12,000	20,000	0	-8,000	3,000	재진 시 일부 항목 제외 진료에 따른 수입 감소(x-ray, 혈액검사 등)
기타수입/그외수입 ◎양성평등기금 해지 잔액 및 이자	0	1,124,360	0	0	1,124,360	1,124,360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 및 해지에 따른 수입 발생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	10,000	16,000	0	10,000	6,000	6,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증가에 따른 세입 증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자립지원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500	37,500	30,000	0	0	5,000	2,500	5,000	
국비	32,500	26,250	21,000			3,500	1,750	-6,250	
도비		5,625	4,500			750	375	5,625	
시비		5,625	4,500			750	375	5,6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자립지원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 경정(37,500,000원)-기정(35,000,000원)	= 2,5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및 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 (월세, 임차 보증금 등 주거지원, 자립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 지원 등)

□ 예산증감 사유

- '25년 하반기 퇴소자(동반아동 1인) 자립지원금 지급
- 2025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기금지원)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13241(2025.09.09.)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퇴소자 동반아동 1인 자립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5명) - 주택 임대차 보증금
202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7명/ 피해자 6, 동반아동 1) - 주택 임대차 보증금
2025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8명/ 피해자 6, 동반아동 2) - 주택 임대차 보증금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000	25,000	-	-	
2024	32,500	32,500	-	-	
2025	35,000	35,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인건비차액)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각 1개소 (총 3개소)		
사업목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3,467	152,845	184,467	0	0	-60,927	29,305	-20,622	
국비		0						0	
도비	52,040	45,854	55,340			-18,278	8,792	-6,186	
시비	121,427	106,991	129,127			-42,649	20,513	-14,43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30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인건비차액)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6인) 명절수당	= 12,559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 종사자(8인) 명절수당	= 16,746	

□ 예산요구 사유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3개소 종사자 14인 추석 명절수당 지급으로 처우개선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13870(2025.09.2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등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지원 (15명)
2024	· 관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지원 (15명)
2025	· 관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지원 (1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724	24,724	-	50	
2024	173,467	121,274	-	52,193	
2025	123,540	123,54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장기동 1888-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구축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40,000	150,000	0	436,443	0	-446,443	140,000	
국비		0						0	
도비		36,000	36,000					36,000	
시비		104,000	114,000		436,443		-446,443	10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46,443	
반려견 놀이터 조성	401-01 시설비	·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용역 : 경정(20,000,000원) - 기정(30,000,000원) ·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 : 경정(120,000,000원) - 기정(556,443,000원)	= = -	-10,000 -436,443

□ 예산요구 사유

- 해당없음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부지에 대한 LH의 과도한 토지매입 요구로 착공 불가
- 해당 부지 내 놀이터 조성 사업 진행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 중단 및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	반영	-	-	-
일자	2024.11. 반영	2024.11	-	-	-	-	-	2024.1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3. ~ 2024. 10. : 놀이터 부지 검토
- 2024. 10. :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 수립
- 2025. 03. : 놀이터 조성 관련 LH 토지 사용 협의 완료
- 2025. 0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5. 07. : 부지 매입 확약 요구(LH→김포시)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 (추진 불가)
- 2025. 10. : 해양하천과 추진 하천재정비 사업(가마지천 일대)부지 내 놀이터 조성 협의
- 2026. 09. : 하천 재정비 사업 완료 후 놀이터 조성 추가 공사 (관리동, 쉼터, 수목식재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586,443	19,206	-	567,23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7급 노경연	전화	5557
-----	-------	------------	-----	----------	----	------

반려견 놀이터 조성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구래동 6874-28 외 2필지(가마지천)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40,000	150,000	0	436,443	0	-446,443	120,000	
국비		0							
도비		36,000	36,000					36,000	
시비		104,000	114,000		436,443		-446,443	84,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0	
반려견 놀이터 조성	401-01 시설비	·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관리동, 쉼터, 수목 식재 등)	= 12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기)추진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부지(장기동 1888-3)는 토지 사용에 대한 최종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추가 사업 진행이 불가능
- 해양하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천재정비사업과 연계(협업)하여 하천 유희공간을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할 계획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	반영	-	-	-
일자	2024.11.	2024.11.	-	-	-	-	-	2024.1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10. : 놀이터 부지 검토
- 2024.10. : 2025년 김포시 반려문화정책 추진 계획 수립
- 2025.03. : 놀이터 조성 부지 사전 협의 완료(LH)
- 2025.04. : 반려견 놀이터 신규조성 계획 수립
- 2025.06.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5.09. : 반려견 놀이터 조성 변경계획 수립
- 2025.10. : 해양하천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 조성 협의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20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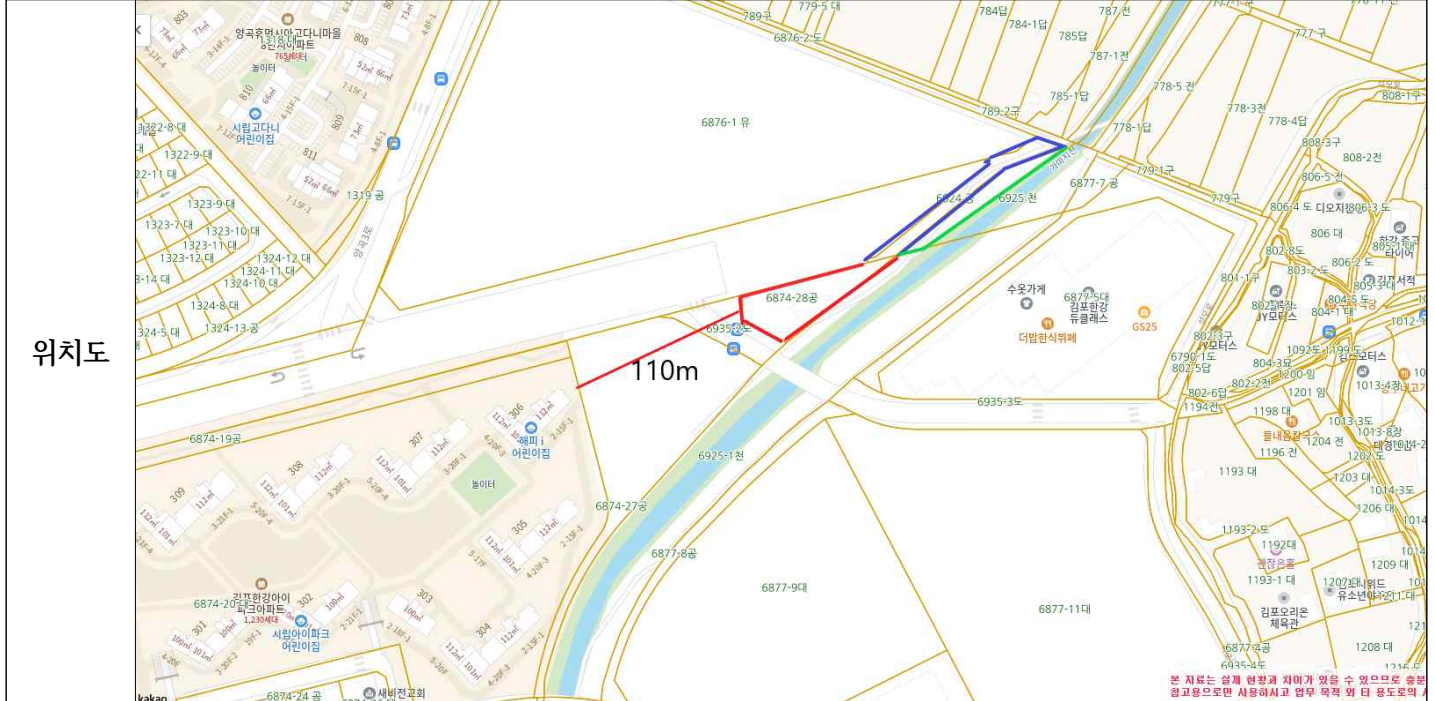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586,443	19,206	-	567,23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가족문화과	사업규모	7,200㎡	이월 요구액 (천원)	120,000
부기명 (세부사업)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위치	구래동 6874-2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7급 노경연	전화	5557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아동보육과
기정액	189,465,516천원	요구액	7,210,54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38	77	0	20	57	39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20	30	0	20	10	10	하반기 부서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반영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 어린이날 문화축제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18	46	0	0	46	28	2025년 어린이날 문화축제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영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교육발전특구] 외국인 원어민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0	1	0	0	1	1	외국어 원어민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영
임시적세외수입	8,290	544,247	350,000	2,400	191,847	535,957	
재산매각수입/불용물품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금 (다함께돌봄센터 솔터마을점)	0	415	0	0	415	415	물품 불용에 따른 매각대금 (다함께돌봄센터 솔터마을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도 해외체류 관련 가정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반납	8,290	3,700	0	2,400	1,300	-4,590	해외체류 관련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중복지급에 따른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직립금 반납(지역아동센터)	0	963	0	0	963	963	1년 미만 퇴직직립금 반납 (제일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1~2024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직립금 반납(다함께돌봄센터)	0	1,295	0	0	1,295	1,295	1년 미만 퇴직직립금 반납 (다함께돌봄센터 매수리마을점, 은여울마을점, 양곡리점)
기타수입/그외수입 ◎육아종합지원센터 통진 분소 용역 선금반환금	0	360,374	350,000	0	10,374	360,374	2024년 용역업체 과업 미이행 계약해지 및 2025년 선금금 등 반환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금 확정으로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
기타수입/그외수입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교육발전특구)	0	177,500	0	0	177,500	177,500	교육발전특구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00	3,550	0	1,750	1,800	1,250	
과태료/기타과태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1,000	650	0	250	400	-350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징수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아동수당 해외체류 90일 이상에 따른 과오지급금 반납	1,300	2,900	0	1,500	1,400	1,600	아동수당 해외체류 과오지급금 환수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6,775	0	0	6,775	6,775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지역아동센터)	0	1,926	0	0	1,926	1,926	제일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2024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다함께돌봄센터)	0	2,591	0	0	2,591	2,591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납 (다함께돌봄센터 매수리마을점, 은여울마을점, 양곡리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지역아동센터)	0	963	0	0	963	963	제일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1~2024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다함께돌봄센터)	0	1,295	0	0	1,295	1,295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납 (다함께돌봄센터 매수리마을점, 은여울마을점, 양곡리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성립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59명		
사업목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651,586	19,192,875	14,855,690	0	0	1,405,488	2,931,697	2,541,289	
국비	9,990,952	11,515,725	8,913,414			843,293	1,759,018	1,524,773	
도비	4,662,444	5,374,005	4,159,593			393,537	820,875	711,561	
시비	1,998,190	2,303,145	1,782,683			168,658	351,804	304,95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31,697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 경정(2,107,255원*759명*12월)-기정(2,028,590원*668명*12월) =	2,931,697	

□ 예산요구 사유

-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668명 → 759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
- 국도비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개소수	57	7	64
2024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개소수	60	7	67
2025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개소수	63	7	7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344,447	14,344,382	-	65	
2024	16,651,586	16,651,219	-	367	
2025	16,261,178	15,945,610	-	315,56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성립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26명		
사업목적	영아전담,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76,789	4,491,834	3,609,340	0	0	102,418	780,076	715,045	
국비	2,266,073	2,695,100	2,165,603			61,452	468,045	429,027	
도비	1,057,501	1,257,714	1,010,615			28,677	218,422	200,213	
시비	453,215	539,020	433,122			12,289	93,609	85,80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80,076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 경정(1,656,281원*226명*12월)-기정(1,501,520원*206명*12월) =	780,076	

□ 예산요구 사유

- 취약보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영아전담, 장애아전문/통합,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210명 → 226명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2023	개소수	105	5	1	11
연도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2024	개소수	117	5	1	12
연도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2025	개소수 (명)	130 (226)	5 (47)	1 (19)	13 (10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94,238	3,386,927	-	7,311	
2024	3,776,789	3,776,748	-	41	
2025	3,711,758	3,513,330	-	198,4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19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보육, 학습, 놀이 등 보조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674,000	9,737,258	9,550,708	0	0	221,550	-35,000	63,258	
국비	5,804,400	5,842,354	5,730,424			132,930	-21,000	37,954	
도비	2,708,720	2,726,432	2,674,198			62,034	-9,800	17,712	
시비	1,160,880	1,168,472	1,146,086			26,586	-4,200	7,59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5,0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경정(1,128,564원*719명*12월)-기정(1,127,915원*722명*12월) =	-35,00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놀이·학습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반영(722명 → 719명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 :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 - 월 평균 354명, 1,099천원/인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311명, 1,099천원/인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 :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 - 월 평균 352명, 1,128천원/인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350명, 1,128천원/인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 :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 - 월 평균 331명, 1,161천원/인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355명, 1,161천원/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80,000	9,042,444	-	37,556	
2024	9,674,000	9,649,149	-	24,851	
2025	9,772,258	7,926,351	-	1,845,9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6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85,000	1,565,075	1,447,528	0	0	68,545	49,002	80,075	
국비	891,000	939,042	868,516			41,126	29,400	48,042	
도비	415,800	438,220	405,308			19,192	13,720	22,420	
시비	178,200	187,813	173,704			8,227	5,882	9,613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00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경정(2,328,980원*56명*12월)-기정(2,339,618원*54명*12월) =	49,002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경조사, 연가, 병가 등의 사용에 따른 보육공백 대체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반영(54명 → 56명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합계	2,650	※ 51명 인건비 월 2,342천원/인
연가	2,012		
병가	554		
기타	84		
연도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합계	3,406	※ 65명 인건비 월 2,401천원/인
연가	3,080		
병가	201		
기타	125		
연도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합계	2,345	※ 72명 인건비 월 2,473천원/인
연가	2,087		
병가	174		
기타	84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00,000	1,363,600	-	36,400	
2024	1,485,000	1,484,921	-	79	
2025	1,516,073	1,313,297	-	202,7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855일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7,100	92,627	87,100	0	0	-1,450	6,977	5,527	
국비									
도비	17,420	27,788	26,130			-435	2,093	10,368	
시비	69,680	64,839	60,970			-1,015	4,884	-4,841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977	
대체인력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경정(108,335원*855일)-기정(111,523원*768일)	= 6,977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경조사, 연가, 병가 등의 사용에 따른 보육공백 대체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반영(768일 → 855일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2023	합계	854
	연 가	703	
	병 가	125	
	기 타	26	
2024	구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합계	1,039	※보육교사 일 93,690원/인, 조리원 일 79,000원/인
	연 가	951	
	병 가	61	
	기 타	27	
2025	구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합계	980	※보육교사 일 96,500원/인, 조리원 일 80,240원/인
	연 가	929	
	병 가	26	
	기 타	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5,000	63,073	-	11,927	
2024	87,100	79,228	-	7,872	
2025	85,650	76,594	-	9,05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072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06,600	4,177,190	4,176,450	0	0	0	740	-29,410	
국비									
도비	841,320	1,253,157	1,252,935				222	411,837	
시비	3,365,280	2,924,033	2,923,515				518	-441,247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40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처우개선비 : 경정(168,001원*2,072명*12월)-기정(167,971원*2,072명*12월) =	740	

□ 예산요구 사유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 분		지원단가	지원인원
	합 계			
2023	정부지원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532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200천원/인	1,147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350
		월급형 대체교사	월 120천원/인	34
		합 계		2,063
2024	정부지원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590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200천원/인	1,094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322
		월급형 대체교사	월 120천원/인	36
		합 계		2,042
2025	정부지원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686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200천원/인	1,023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270
		월급형 대체교사	월 120천원/인	36
		합 계		2,01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42,880	4,229,910	-	512,970	
2024	4,206,600	4,206,570	-	30	
2025	4,176,450	3,054,860	-	1,121,5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872명		
사업목적	영유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456,840	5,142,614	4,715,191	0	0	0	427,423	-314,226	
국비	3,274,105	3,085,568	2,829,114				256,454	-188,537	
도비	1,527,916	1,439,932	1,320,254				119,678	-87,984	
시비	654,819	617,114	565,823				51,291	-37,70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7,42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수당 : 경정(228,927원*1,872명*12월)-기정(235,712원*1,667명*12월) =	427,423	

□ 예산요구 사유

- 담임교사(영유아, 시간제보육반, 장애아, 야간연장 등)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취약보육 지정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보육교직원 수 증가 반영(1,667명 → 1,872명)
- 국도비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 취약보육 지정 확대 (장애아통합 1개소, 시간제보육 5개소, 야간연장 20개소)
- 2025. 1. ~ 2025. 12.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평균)
	2023	담임교사	월 260,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30,000원	322명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평균)
	2024	담임교사	월 260,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30,000원	353명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평균)
	2025	담임교사	월 260,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30,000원	36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13,000	5,397,730	-	15,270	
2024	5,456,840	5,456,620	-	220	
2025	4,715,191	4,058,990	-	656,2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66명		
사업목적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7,307	149,475	181,665	0	0	0	-32,190	-17,832	
국비	100,384	89,685	108,999				-19,314	-10,699	
도비	46,845	41,853	50,866				-9,013	-4,992	
시비	20,078	17,937	21,800				-3,863	-2,141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19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수당 : 경정(75,000원*166명*12월)-기정(75,000원*202명*12월) =	-32,190	

□ 예산요구 사유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가정어린이집 폐업 등 교사겸직 원장 수 감소(202명 → 166명)
-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195명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184명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16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3,400	183,000	-	20,400	
2024	167,307	165,600		1,707	
2025	181,665	111,675	-	69,9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93명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유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47,000	650,896	627,563	0	0	0	23,333	3,896	
국비	388,200	390,537	376,537				14,000	2,337	
도비	181,160	182,251	175,718				6,533	1,091	
시비	77,640	78,108	75,308				2,800	468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33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수당 : 경정(110,000원*493명*12월)-기정(110,000원*475명*12월) =	23,333	

□ 예산요구 사유

- 도시지역에 비해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 (475명 → 493명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2023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2024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2025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9,000	626,120	-	2,880	
2024	647,000	649,910	-	90	
2025	627,563	499,180	-	128,38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732명		
사업목적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해당하는 조, 항 또는 호의 내용을 입력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8,000	942,000	1,002,000	0	0	0	-60,000	-66,000	
국비									
도비	201,600	282,600	300,600				-18,000	81,000	
시비	806,400	659,400	701,400				-42,000	-147,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수당 : 경정(45,324원*1,732명*12월) - 기정(45,578원*1,832명*12월)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보육의 활성화와 장애아·영아·다문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교사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1,832명 → 1,732명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2023	합계	
2023	장애아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100천원/인	26
	영아기본, 다문화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50천원/인	1,136
	영아심화 특수근무수당	월 30천원/인	463
연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2024	합계	1,775
2024	장애아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100천원/인	29
	영아기본, 다문화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50천원/인	1,140
	영아심화 특수근무수당	월 30천원/인	606
연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2025	합계	1,669
2025	장애아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100천원/인	27
	영아기본, 다문화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50천원/인	1,072
	영아심화 특수근무수당	월 30천원/인	57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0,000	879,990	-	20,010	
2024	1,008,000	893,810	-	114,190	
2025	1,002,000	651,700	-	350,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개반(독립반), 13개반(통합반)		
사업목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 또는 비상 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5,632	278,920	319,379	-94,139	0	59,680	-6,000	43,288	
국비	117,816	139,460	159,689	-47,069		29,840	-3,000	21,644	
도비	58,908	69,730	79,845	-23,535		14,920	-1,500	10,822	
시비	58,908	69,730	79,845	-23,535		14,920	-1,500	10,82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및 운영비 : 경정(1,452,708원*16개반*12월)-기정(1,484,000원*16개반*12월) =	-6,000	

□ 예산요구 사유

- 유동적인 시간제 보육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4개반, 통합반 5개반 운영
202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0개반 운영
2025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2개반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7,372	194,749	-	2,623	
2024	235,632	188,905	-	46,727	
2025	284,920	197,898	-	87,0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3개소		
사업목적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해당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72,205	749,340	723,000	0	0	0	26,340	77,135	
국비									
도비	591,547	659,419	636,240				23,179	67,872	
시비	80,658	89,921	86,760				3,161	9,263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34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2,715,000원*23개소*12월)-기정(3,012,500원*20개소*12월) =	26,340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적이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5년 10월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신규지정에 따른 예산 증액(20개소 → 23개소)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3개소(20개소 → 23개소)
- 2025. 1. ~ 2025.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개소(월)	비고
	202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9
2024	사업명	지원개소(월)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0	- 10월 1개소 신규 지정으로 19개소→20개소
2025	사업명	지원개소(월)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3	- 10월 3개소 신규 지정으로 20개소→2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6,826	591,890	-	4,936	
2024	672,205	669,360	-	2,845	
2025	723,000	594,640	-	128,3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3개소		
사업목적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6조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9조제1항제13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4,970	218,400	193,200	0	0	0	25,200	23,430	
국비									
도비	38,994	65,520	57,960				7,560	26,526	
시비	155,976	152,880	135,240				17,640	-3,096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200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조리원 인건비 : 경정(791,304원*23개소*12월)-기정(805,000원*20개소*12월)	= 25,20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25년 10월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신규지정에 따른 예산 증액(20개소 → 23개소)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3개소(20개소 → 23개소)
- 2025. 1. ~ 2025.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2023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5개소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2024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14개소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6개소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2025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700천원/개소	16개소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1,000천원/개소	7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6,800	163,250	-	13,550	
2024	194,970	181,000	-	13,970	
2025	193,200	160,600	-	32,6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3개소		
사업목적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활성화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품질 유지 및 보육서비스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5,890	308,640	292,800	6,400	0	0	9,440	92,750	
국비									
도비	45,578	92,592	87,840	1,920			2,832	47,014	
시비	170,312	216,048	204,960	4,480			6,608	45,736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44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활성화비 : 경정(1,118,261원*23개소*12월)-기정(1,246,600원*20개소*12월)	9,44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필요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40천원 및 안심보육반 운영 1개반당 월 400천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5년 10월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신규지정에 따른 예산 증액(20개소 → 23개소)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3개소(20개소 → 23개소)
- 2025. 1. ~ 2025.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202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490명	19개소
2024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531명	20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2025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40천원/717명	23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지원	월 400천원/4개반	4개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4,900	177,270	-	57,630	
2024	215,890	197,520	-	18,370	
2025	299,200	242,640	-	56,5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3개소		
사업목적	취업부모의 야간연장 보육욕구 충족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안정적 양립 추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3,600	360,800	384,000	0	0	-28,333	5,133	87,200	
국비									
도비	54,720	108,240	115,200			-8,500	1,540	53,520	
시비	218,880	252,560	268,800			-19,833	3,593	33,68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33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400,000원*73개소*12월)-기정(400,000원*72개소*12개월) =	5,133	

□ 예산요구 사유

- 취업 부모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양육가정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는 야간 연장 보육운영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72개소 → 73개소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52개소, 월 400천원
2024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64개소, 월 400천원
2025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77개소, 월 4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9,600	237,600	-	12,000	
2024	273,600	273,600	-	-	
2025	355,667	268,400	-	87,26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8대		
사업목적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보육기회 확대를 통해 보육 아동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1,200	86,000	82,933	0	0	0	3,067	-5,200	
국비	54,720	51,600	49,760				1,840	-3,120	
도비	25,536	24,080	23,221				859	-1,456	
시비	10,944	10,320	9,952				368	-62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67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차량운영비 : 경정(188,596원*38대*12월)-기정(200,000원*34대*12월) =	3,067	

□ 예산요구 사유

○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아동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34대 → 38대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상반기 차량운영비 지원
- 2025.12. : 하반기 차량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대수)
	2023	총계	91,600천원
	상반기 차량운영비	46,000천원	29개소(39대)
	하반기 차량운영비	45,600천원	27개소(38대)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대수)
	2024	총계	86,200천원
	상반기 차량운영비	43,200천원	28개소(37대)
	하반기 차량운영비	43,000천원	27개소(36대)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대수)
	2025	총계	43,000천원
	상반기 차량운영비	43,000천원	27개소(36대)
	하반기 차량운영비	-	12월 집행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2,942	91,600	-	11,342	
2024	91,200	86,200	-	5,000	
2025	82,933	43,000	-	39,93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위생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0개소		
사업목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5,200	196,429	216,000	0	0	-4,572	-14,999	-8,771	
국비	123,120	117,857	129,600			-2,743	-9,000	-5,263	
도비	57,456	55,000	60,480			-1,280	-4,200	-2,456	
시비	24,624	23,572	25,920			-549	-1,799	-1,05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999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급식위생관리비 : 경정(272,820원*60개소 *12월) - 기정(293,650원*60개소 *12월)	= -14,999	

□ 예산요구 사유

- 민간어린이집 급식소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개소
	영유아 정원 및 교직원포함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개소당 300천원/월	47개소/월평균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개소
	영유아 정원 및 교직원포함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개소당 300천원/월	39개소/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5,200	179,700	-	25,500	
2025	211,428	123,900	-	87,5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1,139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55,463	1,947,927	1,971,260	0	0	0	-23,333	-407,536	
국비									
도비	706,639	584,378	591,378				-7,000	-122,261	
시비	1,648,824	1,363,549	1,379,882				-16,333	-285,27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333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급식비 및 운영비 : 경정(14,570원*11,139명*12월) - 기정(14,570원*11,272명*12월) =	-23,333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 등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11,272명 → 11,139명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급식비 : 월평균 12,160명 지원 · 운영비 : 월평균 7,867명 지원
2024	· 급식비 : 월평균 11,293명 지원 · 운영비 : 월평균 7,266명 지원
2025	· 급식비 : 월평균 10,066명 지원 · 운영비 : 월평균 6,075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06,322	2,436,787	-	269,535	
2024	2,355,463	2,160,621	-	194,842	
2025	1,971,260	1,580,971	-	390,2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285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재원중인 0~2세 영아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25,840	634,200	0	484,320	0	152,880	-3,000	108,360	
국비									
도비	525,840	634,200		484,320		152,880	-3,000	108,360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2세)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10,000원*5,285명*12월)-기정(10,000원*5,310명*12월)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보육서비스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5,310명 → 5,285명)
- 도비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6.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 2025. 7. ~ 2025. 12. : 지원 확대에 따라 소급포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 월평균 어린이집 225개소 지원, 월평균 4,491명 지원
2025	· 월평균 어린이집 294개소 지원, 월평균 4,988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25,840	435,000	-	90,840	
2025	637,200	498,920	-	138,2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 지원(교육발전특구)

사업기간	2025. 1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32개소		
사업목적	김포 특화 유보통합 선도모델을 운영하여, 김포시 특성에 맞춘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중심의 통합적 영유아 교육 및 보육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77,500	0	0	0	0	177,500	177,500	
국비									
도비									
시비		177,500					177,500	177,5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7,500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지원	301-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교재교구비 : 1,000,000원* 22개소*1회 600,000원* 5개소*1회 500,000원*305개소*1회	= 22,000 = 3,000 = 152,5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특화 유보통합 선도모델 사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보육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김포교육지원청 교육발전특구 사업 전출금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 편성 및 명시이월
- 2026. 1 ~ 2. : 어린이집 집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부모급여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034명		
사업목적	영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및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9,895,841	38,061,028	35,181,158	-57,661	0	-702,469	3,640,000	-11,834,813	
국비	37,421,881	28,545,771	26,385,868	-43,245		-526,852	2,730,000	-8,876,110	
도비	8,731,772	6,660,680	6,156,703	-10,091		-122,932	637,000	-2,071,092	
시비	3,742,188	2,854,577	2,638,587	-4,325		-52,685	273,000	-887,611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40,000	
부모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부모급여: 경정(630,066원*5,034명*12월)-기정(625,000원*4,584명*12월) =	3,640,000	

□ 예산요구 사유

- 영아(0~23개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반영(4,584명 → 5,034명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부모급여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2023	0~11개월	700천원/월	2,819명
	12~23개월	350천원/월	952명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2024	0~11개월	1,000천원/월	2,879명
	12~23개월	500천원/월	978명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2025	0~11개월	1,000천원/월	3,024명
	12~23개월	500천원/월	1,01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780,000	29,778,950	-	1,050	
2024	49,895,841	49,833,541	-	62,300	
2025	34,421,028	30,778,137	-	3,642,89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273명		
사업목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2
	제34조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32,276	1,515,164	1,731,955	39,209	0	0	-256,000	-317,112	
국비	1,374,207	1,136,373	1,298,966	29,407			-192,000	-237,834	
도비	320,648	265,154	303,092	6,862			-44,800	-55,494	
시비	137,421	113,637	129,897	2,940			-19,200	-23,78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6,000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가정양육수당 : 경정(100,000원*1,273명*12월)-기정(100,000원*1,487명*12월)	= -256,00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 (1,487명 → 1,273명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2023	월 평균 지원인원	2,299명	1명	15명
2024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월 평균 지원인원	1,370명	0명	13명	1,383명
2025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월 평균 지원인원	1,138명	0명	8명	1,14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15,474	3,131,735	-	283,739	
2024	1,832,276	1,778,300	-	53,976	
2025	1,771,164	1,156,200	-	614,96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977명		
사업목적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9,000	1,187,229	1,318,200	0	0	0	-130,971	578,229	
국비									
도비	609,000	1,187,229	1,318,200				-130,971	578,229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971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누리과정 추가지원 : 경정(50,000원*1,977명*12월)-기정(50,000원*2,197명*12월)	= -130,971	

□ 예산요구 사유

- 유보통합 일환으로 어린이집 4~5세 유아 1인당 월 5만원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2,197명 → 1,977명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 누리과정 5세 지원
- 2025. 1. ~ 2025. 12. :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5세 아동	50,000원	968명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4~5세 아동	50,000원	1,36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09,000	433,988	-	175,012	
2025	1,318,200	887,730	-	430,4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14명			
사업목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 해소 및 차별없는 보육기회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7호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90,000	490,000	360,000	0	0	180,000	-50,000	0	
국비									
도비									
시비	490,000	490,000	360,000			180,000	-50,000	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육료 : 경정(130,000원*314명*12월)-기정(180,000원*250명*12월)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해당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25. 10월부터 외국인자녀 보육[도] 확대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외국인아동[시] 보육료 지원 금액 감액 편성(180,000원 → 13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인원)
	202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80천원/1인(1월~3월 영아(만0세~만2세) ·180천원/1인(1월~3월 유아(만3세~만5세) ·180천원/1인(4월~ 영유아(만0세~만5세)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인원)
	2024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80천원/1인(만0세~만5세)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인원)
	2025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80천원/1인(만0세~만5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0,000	430,000	-	20,000	
2024	490,000	490,000	-	-	
2025	540,000	420,000		12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무상보육 5세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842명		
사업목적	기타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국가책임 보육 실현 및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53,640	0	0	0	0	353,640	353,640	
국비		0						0	
도비		353,640					353,640	353,64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53,640	
무상보육 4~5세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무상보육비 : 70,000원*842명*6월	= 353,640	

□ 예산요구 사유

- 기타필요경비 지원을 통하여 국가책임형 유아보육을 실현하고 부모 양육비 부담을 완화

□ 예산증감 사유

-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 도비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2025. 12. : 무상보육 5세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인원	비고
	무상보육 5세 지원	74개소	월 평균 785명	'25년 10월 시행 [성립전 예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아동복지교사 18명		
사업목적	아동복지교사에게 일자리제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9,094	318,726	342,954	0	0	0	-24,228	-20,368	
국비	169,548	159,363	171,477				-12,114	-10,185	
도비	84,773	79,682	85,739				-6,057	-5,091	
시비	84,773	79,681	85,738				-6,057	-5,09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228	
아동복지교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인건비 : 경정(1,343,560원*9명*8월) - 기정(1,426,900원*9명*8월) =	-6,000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인건비 : 경정(2,055,460원*9명*12월) - 기정(2,224,240원*9명*12월) =	-18,228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지원
- 돌봄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기초학습, 외국어, 독서지도, 예체능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을 위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회의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2024.0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지역아동센터 파견 및 교육 진행
- 2025. 1. ~ 12. : 매월 5일 급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아동복지교사 19명 지원
2024	- 아동복지교사 18명 지원
2025	- 아동복지교사 18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8,112	329,187	-	8,925	
2024	339,094	337,258	-	1,836	
2025	342,954	250,065	-	92,8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나연	전화	5529
-----	-------	------------	-----	------------	----	------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1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역아동센터 5개소		
사업목적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위임규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
	해당조례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7,880	0	0	0	0	17,880	17,880	
국비		0						0	
도비		17,880					17,880	17,88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880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스마트학습지원 : (1,788,000원*2계정)*5개소*1회	= 17,880	

□ 예산요구 사유

- 학원이나 과외를 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스마트 학습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1. ~ 2025. 12. 31. :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운영
- 2026. 1. 1. ~ 2026. 1. 31. : 지역아동센터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윤아	전화	5592
-----	-------	------------	-----	------------	----	------

아동수당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약 28,264명		
사업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수당법		제3조제1항,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813,952	33,781,280	33,917,844	-221,914	0	0	85,350	-4,032,672	
국비	30,251,163	27,024,025	27,134,275	-177,531			67,281	-3,227,138	
도비	3,403,255	3,041,395	3,052,605	-19,971			8,761	-361,860	
시비	4,159,534	3,715,860	3,730,964	-24,412			9,308	-443,67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350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아동수당 : 경정(100,000원*28,264명*12월*99.6%) - 기정(100,000원*28,192명*12월*99.6%)	= 85,350	

□ 예산요구 사유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지원 금액 : 아동 한 명당 월 100,000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변동에 따른 증액 (28,192명 → 28,264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아동수당 변동사항 반영 및 매월 25일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만 8세미만 아동 33,255명 지급
2024	- 만 8세미만 아동 31,635명 지급
2025	- 만 8세미만 아동 28,000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621,813	41,384,000	-	237,813	
2024	37,813,952	36,662,900	-	1,151,052	
2025	33,695,930	27,700,500	-	5,995,4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은미	전화	5593
-----	-------	------------	-----	------------	----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아동 1,842명		
사업목적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초기비용 저축 및 사회진출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18,329	1,118,500	1,585,241	-22,228	0	-377,966	-66,547	-499,829	
국비	1,132,830	782,950	1,109,669	-15,560		-264,586	-46,573	-349,880	
도비	72,825	50,331	71,336	-1,000		-17,007	-2,998	-22,494	
시비	412,674	285,219	404,236	-5,668		-96,373	-16,976	-127,4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6,547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정부지원금 : 경정(93,208,340원*12월) - 기정(98,753,920원*12월) =	-66,547	

□ 예산요구 사유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시 만 18세미만까지 최대 월10만원 한도 1:2매칭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매칭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평균 매칭액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53,000원 → 5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대상자 가입안내
- 2025. 1. ~ 12. : 매월 초 아동의 적립액에 따라 1:2 정부지원매칭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452명 (보호대상아동: 94명, 가정복귀: 3명, 기초수급가정: 355명) 정부지원금 매칭
2024	- 1,106명 (보호대상아동: 98명, 가정복귀: 7명, 기초수급가정: 1,001명) 정부지원금 매칭
2025	- 1,522명 (보호대상아동: 93명, 가정복귀: 7명, 기초수급가정: 1,253명, 차상위계층: 169명) 정부지원금 매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8,432	448,684	-	109,748	
2024	1,618,329	820,966	-	797,363	
2025	1,185,047	966,043	-	219,00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나연	전화	5529
-----	-------	------------	-----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보호종료아동 6명		
사업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법령 위임규정 제38조(자립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5,000	45,000	60,000	0	0	0	-15,000	-50,000	
국비		0						0	
도비	28,500	13,500	18,000				-4,500	-15,000	
시비	66,500	31,500	42,000				-10,500	-3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립정착금 - 1차 : 경정(10,000,000원*3명) - 기정(10,000,000원*5명) - 2차 : 경정(5,000,000원*3명) - 기정(5,000,000원*2명)	= -20,000 = 5,000	

□ 예산요구 사유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및 주거 마련 등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정착금 15,000천원(1인, 1회)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보호종료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감액(7명→ 6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교육 수료 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호종료아동 총 14명 지원(1차 6명, 2차 8명)
2024	· 보호종료아동 총 6명 지원(1차 3명, 2차 3명)
2025	· 보호종료아동 총 3명 지원(1차 1명, 2차 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5,000	100,000	-	15,000	
2024	95,000	50,000	-	45,000	
2025	60,000	20,000	-	4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입양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입양아동 5명		
사업목적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900	14,278	19,054	0	0	0	-4,776	-4,622	
국비	13,230	10,013	13,338				-3,325	-3,217	
도비	849	624	858				-234	-225	
시비	4,821	3,641	4,858				-1,217	-1,1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76	
입양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입양비용 : 경정(2,700,000*5명) - 기정(2,700,000원*7명)	÷ -4,776	

□ 예산요구 사유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경우 입양기관에 입양알선비용을 정액 지원
 - 보건복지부허가기관 2,700천원/시도허가기관 1,000천원
 - 입양철회비용 730천원이내/인

□ 예산증감 사유

- 입양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감액(7명→ 5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회의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국내 입양 발생 시 수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입양아동 2명 지원
2024	· 입양아동 7명 지원
2025	· 입양아동 1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00	5,400	-	-	
2024	18,900	17,200	-	1,700	
2025	19,054	2,700	-	16,35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입양아동 5명		
사업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000	10,817	14,000	0	0	0	-3,183	-3,183	
국비	9,800	7,569	9,800				-2,231	-2,231	
도비	630	489	630				-141	-141	
시비	3,570	2,759	3,570				-811	-81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83	
입양축하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입양축하금 : 경정(2,000,000원*5명) - 기정(2,000,000원*7명) ÷	-3,183	

□ 예산요구 사유

-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축하금 지급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입양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감액(7명 → 5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입양축하금을 신청한 입양가정에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입양아동 2명 지원
2024	· 입양아동 7명 지원
2025	· 입양아동 1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	4,000	-	-	
2024	14,000	14,000	-	-	
2025	14,000	2,000	-	1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 지원(교육발전특구)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1. ~ 2026. 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어린이집
사업규모	332개소		
사업목적	김포 특화 유보통합 선도모델을 운영하여, 김포시 특성에 맞춘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계	0	177,500	0	0	0	0	177,500	
국비		0						
도비		0						
시비		177,500					177,5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77,500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 지원	301-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교재교구비 : 1,000,000원* 22개소*1회	= 22,000	
		600,000원* 5개소*1회	= 3,000	
		500,000원*305개소*1회	= 152,5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교육발전 특구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회 추경 편성
- 예산 성립 후 연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 교재교구비 편성 및 명시이월
- 2026. 1.~ 2.: 어린이집 집행 및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보건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보건행정과
기정액	11,950,829천원	요구액	194,80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398,350	484,600	388,700	0	95,900	86,250	
수수료수입/보건의료수수료 ◎보건소 진료 및 보험청구수입	165,000	235,000	165,000	0	70,000	70,000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수요 및 민원인 방문 건수 증가
수수료수입/보건의료수수료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험청구 수입	233,000	249,200	219,200	0	30,000	16,200	24-25년 진료소 수입 반영하여 증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50	400	4,500	0	-4,100	50	25년 기타이자수입 반영하여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5,908	1,125	0	0	1,125	-4,783	
기타수입/그외수입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환급금 등	5,908	1,125	0	0	1,125	-4,783	· 24년 일시적으로 고재처리비용 발생 25년 동일한 수입 요인이 없어 전년 대비 감소 · 4대보험 사업장 환급금,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투표소 사용 사례금 등 편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300	18,062	36,500	0	-18,438	-50,238	
과징금/과징금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61,500	11,450	31,500	0	-20,050	-50,050	25년 수입 반영하여 감액 편성
과태료/기타과태료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6,800	6,612	5,000	0	1,612	-188	25년 수입 반영하여 증액 편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성립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으로 산모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21,429	2,081,378	1,929,500	0	0	0	151,878	359,949	
국비		0						0	
도비	1,205,000	1,456,965	1,350,650				106,315	251,965	
시비	516,429	624,413	578,850				45,563	107,98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1,87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경정(2,081,378,000원)-기정(1,929,500,000원)	= 151,878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043(2025. 9. 25.)호 관련, 변경내시 및 자금교부(8차)에 따라 도비(106,315천원) 성립전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4년 예산 부족분 179,667천원을 '25년 예탁액으로 상계 처리함에 따라 '25년 부족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및 관리,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지원
- 2025.10. : 성립전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 2025.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400명
20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315명
20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15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07,400	1,707,400	-	-	
2024	1,721,429	1,700,000	-	-	
2025	1,929,500	1,929,5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8.4건		
사업목적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8,400	14,000	0	0	0	-5,600	-6,600	
국비	7,500	4,200	7,000				-2,800	-3,300	
도비	3,750	2,100	3,500				-1,400	-1,650	
시비	3,750	2,100	3,500				-1,400	-1,65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600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경정(8,400,000)-기정(14,000,000)	= -5,6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875(2025.10.10.)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내용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예상 사업규모 대비 지원자가 적어 시군별 실적 반영하여 감액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 사업 홍보
- 2025.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 1건 ※ 2024년 신규사업
2025	·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 1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5,000	530	-	14,470	
2025	14,000	359	-	13,6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다인	전화	4153
-----	-------	------------	-----	------------	----	------

암환자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소아 암환자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진단부터 연속 지원함으로써 암치료를 및 생존율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항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106	118,722	95,188	0	0	0	23,534	-61,384	
국비		0						0	
도비	103,561	68,264	54,733				13,531	-35,297	
시비	76,545	50,458	40,455				10,003	-26,08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534	
암환자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경정(118,722,000원) - 기정(95,188,000원)	23,534	=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속 3년간 지원
-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조사 기준을 충족한 건강보험가입자
 - * 연간 최대 2,000만원(기타 암) ~ 3,000만원(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지급에 따른 시군별 예산 조정
- 2025년 3월 신청분부터 미지급에 따른 증액(대상자 70명, 미지금액 138,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암환자 의료비 신청 접수 및 등록, 암환자 의료비 지급 소아 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결정 통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암환자의료비 지원 : 246명 246,340천원 [건강보험(5대암종) 102명 75,017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120명 128,423천원, 소아암 24명 42,900천원]
2024	· 암환자의료비 지원 : 138명 180,106천원 [건강보험(5대암종) 30명 15,373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96명 100,562천원, 소아암 12명 64,170천원]
2025	· 암환자의료비 지원 : 60명 92,801천원 [건강보험(5대암종) 13명 9,473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38명 52,151천원, 소아암 9명 31,17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3,800	246,340	-	137,460	
2024	180,106	180,106	-	-	
2025	95,188	92,801	-	2,38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8급 박다윗	전화	4103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기정액	8,244,301천원	요구액	△1,02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50	0	50	-30	-20	-50	
기타수입/그외수입 ◎행동강령위반 환수금 등	50	0	50	-30	-20	-50	위반사항 없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1,000	0	-1,000	0	
과태료/기타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0	0	1,000	0	-1,000	0	관련법 위반 적발사항 없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세입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보건사업과
기정액	2,508,367천원	요구액	△132,990천원

○ 세외수입

(단위 : 천원)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80	236	1,000	0	-764	156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위탁, 예탁)	80	30	1,000	0	-970	-50	· 세부사항 입력에 따른 감액 · 하반기 통장이자수입 예상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 김포시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하반기 이자수입 반납	0	206	0	0	206	206	· 3,4분기 이자수입 반납
임시적세외수입	180	201	100	0	101	21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과오청구 비용반납	0	201	0	0	201	201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공기관 과오청구비용 반납
기타수입/그외수입 ◎행동강령위반 환수금 등	180	0	100	0	-100	-180	· 환수금 미발생에 따른 감액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500	6,000	2,500	-	3,500	1,500	
기타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	4,500	6,000	2,500	-	3,500	1,500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단위 : 천원)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470	0	0	470	470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과오청구 비용반납	0	470	0	0	470	470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공기관 과오청구비용 반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568명 ※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위임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4,397	286,340	521,397	-90,602	0	0	-144,455	31,943	
국비	178,078	200,438	364,978	-63,422			-101,118	22,360	
도비		12,885	23,463	-4,077			-6,501	12,885	
시비	76,319	73,017	132,956	-23,103			-36,836	-3,30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45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경정(504,120원*568명) - 기정(640,000원*약673명)	= -144,455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6151(2025. 10. 17.)호,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5. 1. ~ 12.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추진, 사업홍보 및 제공기관 모집
- 2025. 12.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459명 - 제공기관 등록 : 8개소
2025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568명 - 제공기관 등록 : 15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54,397	254,397	-	-	
2025	430,795	284,773	-	146,0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관내 초등학교 4학년 4,961명		
사업목적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 초등학교의 구강건강실현 기반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구강보건법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제1항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5조
	제5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초등학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 2. 초등학교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초등학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0	240,100	294,000	0	0	0	-53,900	-59,900	
국비		0						0	
도비	150,000	120,050	147,000				-26,950	-29,950	
시비	150,000	120,050	147,000				-26,950	-29,9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3,900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협의체운영 참석수당 및 홍보 등 운영비 : 경정(1,972,000원) - 기정(6,000,000)	=	-4,028
	307-01 의료및회복비	·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 진료비 : 경정(48,000원*4,961명) - 기정(48,000원*6,000명)	=	-49,872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996(2025. 9. 24.)호,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사업계획 수립
- 2025. 2. ~ 4. : 치과의료기관·초등학교 선정 및 사업 지침서 배부
- 2025. 5. ~ 11. : 예방의료서비스 제공 및 검진비 지급
- 2025. 12. : 사업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참여의료기관 : 80개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 4,451명
2024	- 참여의료기관 : 80개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 4,880명
2025	- 참여의료기관 : 79개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 4,08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0,250	252,247	-	18,003	
2024	300,000	246,031	-	53,969	
2025	294,000	197,601	-	96,39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담당자	보건9급 임민주	전화	4132
-----	-------	------------	-----	----------	----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134명(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 감별검사비 대상자)		
사업목적	치매 검사비 지원을 통한 치매 조기발견 및 증증화를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과 보호자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740	13,277	3,223	0	-5,760	10,740	
국비		0					0	
도비		3,222	3,983	967		-1,728	3,222	
시비		7,518	9,294	2,256		-4,032	7,51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760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치매감별검사비 : 경정(80,000원*134명)-기정(80,000원*206명) =	-5,76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742(2025. 9. 24.)호, 변경내시 통보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665(2025. 10. 31.)호, 2026년 일몰 예정 사업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대 상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 원인규명(혈액검사,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자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지원
 - 내 용 :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 항목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상한 8만원 실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742(2025. 9. 24.)호,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 2025년 신규사업으로, 협력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 대상이 결정되므로, 예산 편성시 정확한 대상자 예측이 어려움
 - '25년 감별검사 지원 신청자 39명(10월 말 기준)으로 검사 수요 대비 집행률 저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
- 2025. 2. ~ 12.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2025. 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024	·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025	·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3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6,500	3,061	-	13,4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정	담당자	간호8급 변희연	전화	4168
-----	-------	------------	-----	----------	----	------

부 · 면 · 행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고촌읍

(고촌읍)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고촌읍
기정액	308,839천원	요구액	7,8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8,955	30,950	27,150	-	3,800	1,995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26,080	28,500	27,000	-	1,500	2,420	공유재산 신규점용 반영
사용료수입/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	2,875	2,450	150	-	2,300	-425	사용료 세입추계 반영
임시적세외수입	-	4,000	-	-	4,000	4,000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컨테이너하우스 매각대금	-	4,000	-	-	4,000	4,000	전호리 불용 컨테이너하우스 매각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고촌읍 주민자치회(장차로14)
사업규모	고촌읍 주민자치회 사무국 1개소		
사업목적	고촌읍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력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7항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등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200	44,000	45,200	0	0	0	-1,200	-4,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8,200	44,000	45,200				-1,200	-4,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	
주민자치회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 자치계획수립 참가자 보상 : 경정(0원)-기정(10,000원*5명*2일*12월) =	-1,200	

□ 예산증감 사유

-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비용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연중 : 주민자치회 교육 및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
- 2025. 3. ~ 6.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5. : 자치계획 수립(워크숍, 정책공유회 등) · 2023. 3.~5. : 청정감시원 구성 완료 및 청정감시원 활동(1기) · 2023. 5. : 주민총회 개최 · 2023. 6.~8. : 청정감시원 구성 완료 및 청정감시원 활동(2기) · 2023. 9.~11. : 청정감시원 구성 완료 및 청정감시원 활동(3기)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 주민자치위원 3기 위촉(임기2년) 및 창립 총회 · 2024. 3.~6. : 자치계획수립(워크숍, 정책공유회 등 실시) · 2024. 6. : 주민총회 개최 · 2024. 6.~8. :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및 분과회의 등 실시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1.~5. : 자치계획 수립(워크숍, 정책공유회, 선진지견학 등) · 2025. 6. : 주민총회 개최 · 2025. 6.~8. :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및 분과회의 등 실시 · 2025. 3. ~ 11: 분과별 사업 구성 완료 및 수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7,869	95,846	-	22,023	
2024	48,200	41,706	-	6,494	
2025	45,200	33,507	-	11,69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고촌읍	부읍장 최성기	담당자	행정8급 이정현	전화	3257
-----	-----	---------	-----	----------	----	------

풍곡리 배수로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6. 1. ~ 2026. 4.	사업위치	풍곡리 435번지
사업규모	벤치플룸관(1,000*1,000) 300m 설치		
사업목적	파손된 마을안길을 재포장하여 통행안전 확보 및 주민편의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00,000	100,000	0	0	0	0	1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100,000	100,000					1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주민참여예산 사업	401-01 시설비	· 터파기 및 벤치플룸관 설치(L=300m) · 관급자재 구매(벤치플룸관)	= 60,000 = 4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 사업비 부족으로 배수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 일부만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대상지가 잔여부분 배수로로 선정되어 효율적인 일괄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2026. 2. : 계약 및 착공
- 2026. 4.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0,000	-	-	1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고촌읍	사업규모	벤치플룸관(1,000*1,000) 300m 설치	이월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사업위치	풍곡리 435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고촌읍	산업개발팀장 최보문	담당자	시설8급 박종훈	전화	3283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양촌읍

(양촌읍)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양촌읍
기정액	110,460천원	요구액	△13,37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2,000	50,000	62,000	0	-12,000	-12,000	
수수수입/증지수입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62,000	50,000	62,000	0	-12,000	-12,000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9.29. ~ 10.31.)에 따른 세입 감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350	2,975	4,350	0	-1,375	-1,375	
변상금/변상금 ◎시유지 변상금	350	975	350	0	625	625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기타과태료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과태료	4,000	2,000	4,000	0	-2,000	-2,000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 ('24년 대비 약 40건 감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기간	2025. 7. ~ 8.	사업위치	학운리2751(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사업규모	무인민원발급기 설치(1대)		
사업목적	- 서류발급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관공서 방문 불편 해소 및 생활근거지 행정서비스 점점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학운리 인근 주민 및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입주기관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6,540	0	0	31,000	0	-4,460	26,5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540			31,000		-4,460	26,5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460	
김포제조융합 혁신센터 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401-01 시설비	. 무인민원발급기 전기·통신 공사 : 경정(1,540,000원) - 기정(6,000,000원) =	-4,460	

□ 예산요구 사유

- 행정복지센터와 원거리에 있는 학운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무인민원발급기 전기·통신공사 비용 감소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
일자	2024.11.	-	-	-	-	-	-	2023.6.16.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사업비 편성 및 관계기관 사전절차 협의
- 2025. 7. : 무인민원발급기 조달구입
- 2025. 8.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2025. 7. 무인민원발급기 조달구입 · 2025. 8.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1,000	25,518	-	5,48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양촌읍	민원팀장 김지숙	담당자	행정7급 박은아	전화	3331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대곶면

(대곶면)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대곶면
기정액	352,117천원	요구액	3,200천원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3,200	0	0	3,200	3,200	
사용료수입/주차요금수입 ◎주차요금수입	0	3,200	0	0	3,200	3,200	청사 주차장 운영 유료화(25.11.)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건립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4.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올생리 422-3
사업규모	공공목욕시설 1개소(지하1층~ 지상1층 / 연면적 288.85㎡)		
사업목적	공공목욕시설 건립으로 노약자 및 주거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20,000	675,000	675,000	0	0	0	0	673,867	
국비		0							
도비		0							
시비	120,000	675,000	675,000					673,867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673,867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건립	401-01 시설비	· 공공목욕시설 건립 공사비 : 673,867,000원	= 673,867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건립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예산 연내 집행 불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반영	-	-	-	-
일자	2024.11. 반영	2024.02.	-	-	-	-	2024.02.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4.~08. : 공공목욕시설 건축기획 용역
- 2024. 10. : 구)대곶복지회관 건축물 해체설계 용역 완료
- 2025. 07.~08. : 대곶 공공목욕시설 BF예비인증 및 건축협의 완료
- 2025. 12. : 공공목욕시설 공사 착공
- 2026. 12. : 공공목욕시설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4,397,930	2,048,000	1,239,930	1,239,930	0	0	0	0	1,110,000	
공 정 별	설계비	141,586	141,586	0						
	보상비	1,228,000	1,228,000	0						
	공사비	2,982,015	642,085	1,239,930	1,239,930				1,100,000	
	감리비	32,996	32,996	0						
	부대비	13,333	3,333	0					1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대곶 공공목욕시설 건축기획 용역 집행 · 구) 대곶복지회관 해체설계 용역 집행
2025	· 구) 대곶복지회관 해체공사 완료 · 대곶 공공목욕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대곶 공공목욕시설 BF인증 및 건축협의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0	-	500,000	500,000	
2024	1,804,930	51,950	1,252,980	500,000	
2025	1,927,980	363,171	-	1,564,809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대곶면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1층	이월 요구액 (천원)	673,867
부기명 (세부사업)	대곶 공공목욕시설 건립	사업위치	대곶면 읍생중앙로52번길 4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곶면	부면장 김태우	담당자	행정6급 윤효정	전화	3358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월곶면

(월곶면)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월곶면
기정액	134,591천원	요구액	2,8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300	3,300	500	0	2,800	3,000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공용차량) 폐차 대금	0	2,100	0	0	2,100	2,100	공용차량 폐차 대금
기타수입/그외수입 ◎행동강령위반 환수금 등	300	1,200	500	0	700	900	휴면계좌 잔액 세입조치에 따른 증액

사회보장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사업규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명		
사업목적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복지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 연계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및 지역 사회 보호 체계 구축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5항
	위임규정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해당조례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	800	1,200	0	0	0	-400	-7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	800	1,200				-400	-7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사회보장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 : 경정(20,000원*10명*4회) -기정(20,000원*15명*4회)	= -4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자원 발굴 및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월곶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미참석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및 참석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01. ~ 12.: 월곶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차 정기회의 개최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2, 5, 7, 9, 10월)
2024	- 2024. 01. ~ 12.: 월곶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차 정기회의 개최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2, 6, 9, 12월)
2025	- 2025. 01. ~ 10.: 월곶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차 정기회의 개최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2, 6, 10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24	1,474	-	350	
2024	1,500	580	-	920	
2025	1,200	520	-	6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월곶면	찾아가는복지팀장 한규	담당자	복지9급 한지민	전화	3407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김포본동

(김포본동)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김포본동
기정액	52,712천원	요구액	△1,87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51,062	48,002	51,102	-	-3,100	-3,060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 등	60	0	100	-	-100	-60	청사 사용 신청 등 세입 사유 미발생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51,000	48,000	51,000	-	-3,000	-3,0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0월 발급 수수료 면제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	0	1	-	-1	-1	공공예금이자 미발생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	2	1	-	1	1	보통예금계좌 이자 발생
임시적세외수입	13	1,235	10	-	1,225	1,222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13	27	10	-	17	14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발생
기타수입/그외수입 ◎보통예금계좌 휴면계좌잔액	0	1,208	0	-	1,208	1,208	보통예금계좌 휴면계좌잔액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사우동

(사우동)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사우동
기정액	86,482천원	요구액	△19,74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5,570	60,810	80,550		-19,740	-4,760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지상기기 설치 임대료(한전)	400	750	400		350	350	부과시기 변동으로 수입 증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	170	60	150		-90	-110	유희공간 대여 수입 감소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65,000	60,000	80,000		-20,000	-5,000	국정원 화재관련 수입 감소

스마트폴 설치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9. ~ 2026. 6.	사업위치	사우동 410번지 등 4개소
사업규모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내 스마트폴(가로등, CCTV 기능) 4개소 설치		
사업목적	방법시설인 스마트폴 설치를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월		
법 적 근 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52,774	0	0	152,774	0	0	152,77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2,774			152,774			152,774	공항공사지원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52,774	
주민편익사업 (한국공항공사 직접지원)	401-01 시설비	· 스마트폴 설치 : 38,193,500원*4개소 (폴대,조명,CCTV,디스플레이,스마트센서 자재 및 설치 포함) =	152,774	공항공사지원 : 114,580천원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스마트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과 등)와의 협의가 진행중으로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함.
- 가로등 조명, CCTV, 비상벨 등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방법시설인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년 항공기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승인
- 2025.09. : 실시설계 및 세부설치 위치 협의 등
- 2025.10. ~ 12. : 관계부서 협의 등
- 2026.01. ~ 06.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52,774	-	-	152,77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사우동	사업규모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내 스마트폴 (가로등, CCTV 기능) 4개소 설치	이월 요구액 (천원)	152,774
부기명 (세부사업)	스마트폴 설치사업	사업위치	사우동 410번지 등 4개소		
위치도					
	사우동 410번지 (1개소)		사우동 1079-1번지 (1개소)		
					
	사우동 380-8번지 (1개소)		사우동 1257번지 (1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사우동	행정민원팀장 남혜진	담당자	시설8급 김윤택	전화	3605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구래동



(구래동)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구래동
기정액	73,401천원	요구액	572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70,195	70,103	70,051	0	52	-92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50	50	50	0	0	0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143	52	0	0	52	-91	청사 회의실 대관료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70,000	70,000	70,000	0	0	0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	0	0	0	0	-1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	1	1	0	0	0	
임시적세외수입	200	370	0	350	20	170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	0	20	0	20	0	20	불용품(노후PC)매각대금
기타수입/그외수입 ◎그외수입	200	350	0	330	20	150	- 청사 투표소 사용 사례금 - 김포시종합감사에 따른 출장여비 환수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00	3,500	1,500	1,500	500	1,100	
과태료/기타과태료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과태료	2,400	3,500	1,500	1,500	500	1,100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편익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구래동 일원
사업규모	구래동 일대 기반시설 재해 긴급복구		
사업목적	폭우,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실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0	30,000	0	0	0	-3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0	30,000				-30,000	-2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 기반시설 환경정비 및 재해 긴급복구	= -30,000	

□ 예산증감 사유

- 폭우,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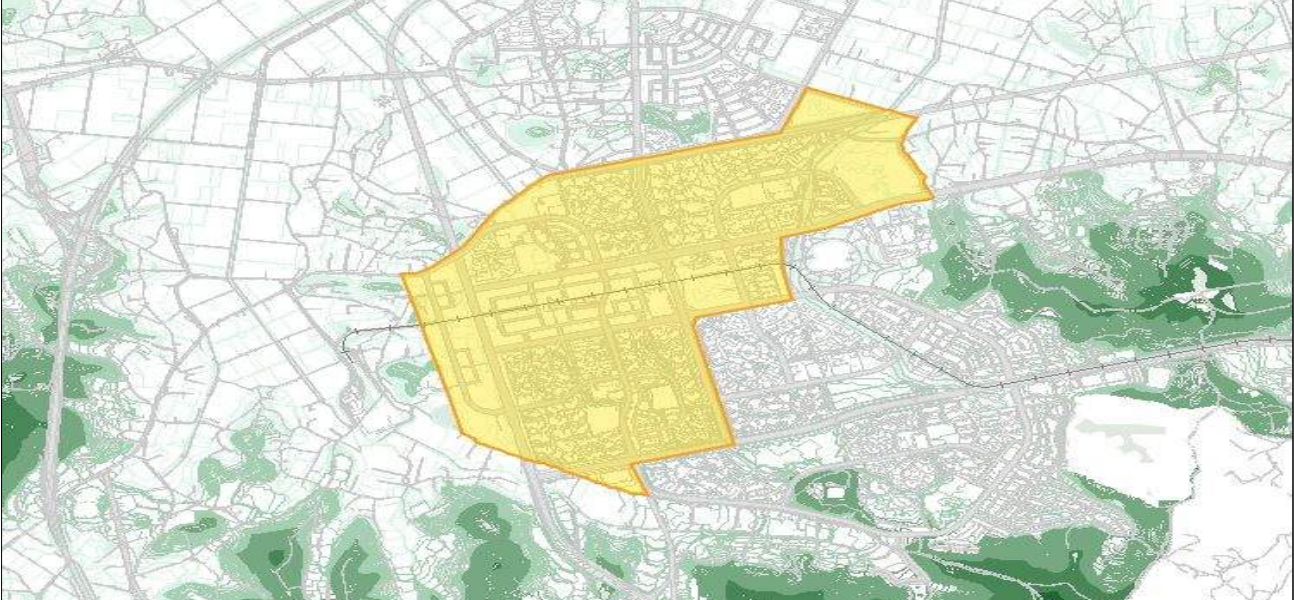
2023	· 집행사유 미발생(2023년 2회추경 전액 삭감)
2024	· 집행사유 미발생(2024년 제2회추경 10,000천원 삭감)
2025	· 집행사유 미발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000	-	-	20,000	
2025	30,000	-	-	3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구래동	사업규모	주민편익사업	4회추경 요구액 (천원)	-30,000
부기명 (세부사업)	기반시설 및 재해 긴급복구 (주민편익사업)	사업위치	구래동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구래동	행정민원팀장 최성일	담당자	시설8급 전형태	전화	3755
-----	-----	------------	-----	----------	----	------

사회보장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사업규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목적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	1,100	1,600	0	0	0	-500	-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00	1,100	1,600				-500	-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	
사회보장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회의참석수당 : 경정(20,000원*11명*5회) - 기정(20,000원*20명*4회) =	-5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위촉직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위촉직 위원 회의 참여 부진으로 인한 잔여 수당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20,000원*12명*1회)
- 2025. 6. :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20,000원*11명*1회)
- 2025. 8. :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20,000원*13명*1회)
- 2025. 11. :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20,000원*14명*1회)
- 2025. 12. : 임시회의 참석수당 지급(20,000원*5명*1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후 식대 지급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 활동비 지급
202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 활동비 지급
2025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 활동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8	1,777	-	631	
2024	1,600	880	-	720	
2025	1,600	720	-	8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구래동	찾아가는복지팀장 이인옥	담당자	간호8급 양은정	전화	3771
-----	-----	--------------	-----	----------	----	------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7항
	해당조례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④ 자치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등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400	7,200	7,800	0	0	0	-600	-1,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400	7,200	7,800				-600	-1,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경정(50,000원*12월)-기정(100,000원*12월) =	-600	

□ 예산요구 사유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 예산증감 사유

- 통신요금 등 고지 금액이 예산요구액 대비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연중 :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및 사무국장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 ※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금 내 집행
2024	-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3기 주민자치회 위원 23명 위촉)
2025	-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400	6,986	-	1,414	
2025	7,800	4,749	-	3,05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구래동	행정민원팀장 최성일	담당자	행정8급 김한솔	전화	3760
-----	-----	------------	-----	----------	----	------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력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7항	
	해당조례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 제1항	
<p>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등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680	26,429	37,379	0	0	0	-10,950	-16,25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680	26,429	37,379				-10,950	-16,25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950	
주민자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기회의 참석수당 : 경정(60,000원*16명*12월)-기정(60,000원*23명*12월) = . 분과회의 참석수당 : 경정(10,000원*16명*2회*12월)-기정(10,000원*23명*2회*12월) =	-5,04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주민자치회 워크숍 : 경정(420,000원)-기정(3,450,000원) =	-3,030	
	301-14 기타보상금	. 자치계획수립 참가자 보상 : 경정(0원)-기정(1,200,000원) =	-1,200	

□ 예산요구 사유

- 자치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수당 지급
- 실질적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 우수사례 공유 및 자치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자치활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자치활동에 대한 참여 독려 및 주민자치 확산

□ 예산증감 사유

-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인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 주민자치회 인원 감소(23명→15명) 및 워크숍 애기봉 당일 일정 추진(버스임차료 및 숙박비용 등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 자치계획수립 시 민간인 참가자 부재로 인한 보상금 전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연중 :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 2025. 3. ~ 6.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2025. 10. ~ 11. : 주민자치회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어르신 이미용 봉사 진행(매월) - 선진지 사례탐방(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유수지 생태공원) 진행('23.3.) - 제3회 구래동 주민총회 개최 및 2024년 구래동 자치계획 수립('23.5.) (어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마을 축제 만들기, 어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잘 지키면 명품 구래동/총 3개 사업) - 2023년 주민자치회 활동 회고 워크숍 진행('23.11.)
2024	- 어르신 이미용 봉사 진행(매월) - 자치계획 수립 및 선진지 탐방 워크숍(제주도 서귀포시삼다종합사회복지관) 진행('24.5.) - 제4회 구래동 주민총회 개최 및 2025년 구래동 자치계획 수립('24.7.) (문화의 거리 활성화 축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어르신 이미용 봉사 등 7개 사업 발굴) - 2024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어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24.8. ~ 11.) -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공모사업 추진(삼대(三代)가 어울리는 호수&락(樂)축제)('24.9. ~ 10.)
2025	- 어르신 이미용 봉사 진행(매월) - 제5회 구래동 주민총회 개최 및 2025년 구래동 자치계획 수립('25.7.) (구래동 호수&락 축제, 구래동 포럼, 어르신 이미용 봉사, 찾아가는 주민자치 의견 수립) - 2025년 주민자치회 워크숍 진행('25.1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1,828	50,592	-	21,236	
2024	42,680	30,014	-	12,666	
2025	37,379	21,953	-	15,4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구래동	행정민원팀장 최성일	담당자	행정8급 김한솔	전화	3760
-----	-----	------------	-----	----------	----	------